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93년 12월 6일
행정재무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區政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區政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4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29. (월) ~ 12. 1. (수)까지 (3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3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직원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홍상기	전문위원 강성희 사무국 이현영 속기사 정인철 김명옥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감사 대상 기관	장소	감사 방법	비고
'93. 11. 29(월) 10:00~20:30	문화정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	현황보고 자료확인	*필요시 동사무소
'93. 11. 30(화) 10:00~21:00	총무국		질의 답변	확인감사
'93. 12. 1(월) 10:00~17:00	재무국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 관 별	감 사 사 항	비 고
문화공보실	1. '92 어머니 합창단 단복 지원비 현황 2. 공연장(극장)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3. 음반, 비디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4. 서울신문 배부 현황 5. 구정홍보 현황 6. 주요 문화행사 내역 및 지도점검 내역 7. '92 유공시민 산업시찰예산 가정복지과 여성단체 연합회 사용관계	
감 사 실	1. '93 징계처분자 명단 2. '93 징계, 훈계, 경고 처분 관리대장 3. 구·동자체 감사결과 보고 4. 여의도지역 도로점용료 부과 사항 5. 차량출입시설 허가 처리 및 주변 현안 사항 6. 감사원, 본청 감사사항 및 결과 7. 공무원 징계, 훈계, 경고 사항 8.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처리현황	
총 무 과	1.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현황 2. 구민회관 유·무상 임대현황 3.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진용관계 4. 구의회 의사당 임대관계 5. 공무원의 승진관계 6. '93 건축과 직원 전보현황 7. '92, '93 승진을 앞둔 구청직원 인사이동 현황 8. 공적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9. 필수 실무요원 인사기록 카드 10. '93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관계 11. 구청사(보건소) 증축 전용에 관한 사항 12.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및 확장공사 현황 13. 구 자판기 운영 현황	

소 관 별	감 사 사 항	비 고
총 무 과	14. 구민회관 비품 인수인계서 관계 15.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현황 16. 동예산중 동운영비 배정내역 17. 여성통장 현황 18. 동별 공과금직원 정원과 현원	
기 획 예 산 과	1. 예산확보 대책 및 재정기획 업무추진에 대한 지출내역 2. 예산편성 관련 위원 간담회 지출내역 3. '92 예산 미심의 전용내역 4. 동사무소 예산 배정내역 5. '92 불용액 내역 및 사유 6. 송무 수행 활동비 지출내역 7. 보건소 증축공사 예산전용 현황 8. 소송 계류중인 사항 및 처리현황 9. 여의도광장 교통사고 관계 10. 전산기 구매 현황	
국 민 운 동 지 원 과	1. '92, '93 자연보호 철동 걸러 및 지원현황 2. '93 특별관공비 집행 내역 3. 신길6동 새마을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정산내역 4. '93 시민봉사의 날 활동실적에 대한 표창여부 5. '93 사회단체 지원 현황	
생 활 체 육 과	1. 대림운동장 본부식 설치공사 관계 2. 구민 전진생활체육 육성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3. 체육시설 지도단속 실적 4. '94년도 생활체육 운영실적 및 '94년도 계획 관계	
민 방 위 과	1. 여성 통민방위대장이 132명(여의도 56명)이나 되어 유사시 대원통솔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개선방안 2. 민방위 교육현황 3. 민방위의 날 운영계획 4. 화생방 운영계획	

소 관 별	감 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1. '92. 1. 1~'93. 11. 현재까지 컴퓨터 및 타자기 구입현황 2. 국·구유지 매각 신청처리 현황 3. '92, '93년도 구유지 관리 계획 승인 및 처분 신청현황 4. '93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 5.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지출내역 6. 시유재산 매각 현황 7. 청소차량 구입의 입찰계획서 및 지출내역	
세 무 1 과	1. '92. 10. 31 현재 세외수입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세무2과원과	1.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현황 2.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 내역 3. 체납세액 결손처분 내역	
토 지 관 리 과	1. '9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 2.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등 민원서류 관계 3. 부동산개업 허가신고 처리 관계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감 사 실	<p>제목 : 도로점용료가 시수입으로의 계상</p> <p>(현황 및 문제점) 허가사항 답변시 여의도광장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이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시수입으로 계상된다는 서울시장 방침사항('82. 10. 18)이라고한 답변은 지자체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부적합한 사례.</p> <p>(처리의견) • 시장 방침에 의해 시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목과에 실시로 영등포구 수입으로 계상되어 자치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감 사 실	<p>제목 : 기부체납된 구유재산의 도로점용료 부과 사항</p> <p>(현황 및 문제점) ○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치한 지하보도는 '92. 6. 19 우리구 토목과에서 허가통보되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43조 1항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를 22,483,720원을 부과. - '92. 8. 20.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의신청하여 시청 건설행정과에 서면 질의한 바 구자체 판단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통보받아 도로점용 면제불가를 통보하였으나 - '92. 9. 23. 재 이의신청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p> <p>(처리의견) •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세외수입 심의 위원회에 안건 심의한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보도는 교회자금으로 설치하여 우리구에 기부체납한 시설로서 교회전용시설이 아니며 일반시민도 통행가능한 시설이므로 도로점용료 부과건을 취소결정 통보하였음.</p>	
총 무 과	<p>제목 : 자판기 운영수입금의 처리관계</p> <p>(현황 및 문제) ○ 구청 구내식당 및 구민회관 음료판매 자판기 운영수입을 총무과에서 임의로 처리하고 있음.</p> <p>(처리의견) 민간에 위탁관리 사용토록하고 사용료를 지급 받든지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수입을 구수입으로 하여 입금액 전체를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p>	
총 무 과	<p>제목 : 예산 전용관계</p> <p>(현황 및 문제점) ○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66,287천원을 보건소 부대비, 시설비, 휴막이 보강공사에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음.</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총 무 과	(처리의견) ○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예산전용이 가능하나 모든 예산은 최초 편성 당시 실질적인 금액을 기술적으로 확인 편성하여야 할 것임.	
총 무 과	제목 : 근무 성적 평정의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자(동장)와 확인자(총무국장)가 협의 평정하여야 하나 확인자인 총무국장이 평정자의 자료와 피평정자의 경력, 동일직급 근무연한, 상벌 및 근무상태등을 참작하여 최종 근무 평정함은 잘못된 행정임. (처리의견) 향후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평정 할 것.	
감 사 실	제목 : 정·현원의 형평성 결여 (현황 및 문제점) ○ 과, 동별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현실여건에 맞게 배치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별첨된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서와 같이 과부족에 있어서 감사실 +7, 세무1과 -7명, 토목과 -5명으로 특정과에 인원 편중되어 있으며, 세무1과 경우는 일용직을 20명정도 쓰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도 -17명으로 과부족한 실정임. (처리의견) • 조속한 시일내에 형평성에 정·현원에 맞게 배치하여야 할 것임.	
총 무 과	제목 : 인사행정의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인사행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상부관서(시청)에서 파견근무를 요청시 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파견에 응해주는 것은 아직도 상급관청의 지시에 따르는 행정을 하고 있음. (처리의견) • 인사조례에 상대관청에서 거부하면 되는 것을 상급관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의 시정을 요함.	
총 무 과	제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보완책을 요구했으나, 총무과에서는 시정 및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구의회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인계하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총 무 과	(처리의견) •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책이 마련됐으나, 사장되었으며 담당자간에 인수인계시 확실한 인계가 필요하며, 시정보완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총 무 과	제목: 통반장보상품의 선정과정에서의 의견 반영 (현황 및 문제점) ○ 구청 총무과에서 '92. 12. 26 대한도자기 5,800만원, '93. 9. 22 대한도자기 5,617만원, 추석통반장 보상품을 구입·선정함에 있어 통반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처리의견) • 보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통반장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제목: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1. '92년도 불용액 10,199백만원 (결산율 87.5%) 2. '93년도 불용예산액 11,967백만원 (결산율 86.4%) 3. 위와같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4. 예산의 목간전용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미준수한 사례. (처리의견) • 예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여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용을 억제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전용할때는 필히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할것.	
국 민 운 동 지 원 과	제목: 예산을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운동지원자금 약 2억 7천만원상당 금액중에 새마을지회 6,740만원, 바르게살기 7,480만원, 기타사회단체지원 5,000만원인 바, 시대상황으로 보아 자연보호운동이 시급하게 활성화 해야하는데 너무나 외면당하는 실정이며 자연보호운동단체에는 정액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임. (처리의견) • 향후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와 동단체에도 정액보조로 사기를 앙양시켜야 하겠으며 • 국민운동단체 산업시찰 경비 8,344,000원의 지원으로 포항제철 산업시찰은 경비절약운동이 한창인 이때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지양해야 할 것임.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생활체육과	<p>제목 : 예산을 전용한 사례</p> <p>(현황 및 문제점)</p> <p>○ 지원단체등에 지급하려는 경상사업비 119,252,000원인 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민체육대회 4천만원, 시민체육대회 지원 2천5백만원 등 6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야 하고, 2. 구체육회지원 1천1백만원은 체육단체에 지원코자 책정되었으며, 3. 체육단체(5개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기축구회 ② 테니스 연합회 ③ 배드민턴연합회 ④ 게이트볼연합회 ⑤ 태권도연합회 <p>위 5개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등 예산이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되고 있음. <p>(처리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천5백만원은 불용처리케되는 바, 향후 심사숙고하여 예산책정을 하기 바람. 2. 구체육회는 관내 체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임에도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 5백만원을 사용케하는 행정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3. 각 5개단체의 회원수등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인 정액 2,000,000원의 지원은 형평을 잃은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4. 구민건전생활 육성지원금의 용도를 본 뜻과는 달리 대회개최 축하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바람. 	
민 방 위 과	<p>제목 : 민방위 통대장의 여성통장 검직사항</p> <p>(현황 및 문제점)</p> <p>○ 민방위 하부조직인 통대장 685명중 약 20% 132명이 여성통장으로써 검직을 하고 있는 사례.</p> <p>(처리의견)</p> <p>①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과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통장이 20%인 132명이 통대장을 검하고 있는 것을 유사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함. <p>○ 본 건은 1992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사항임.</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재 무 과	<p>제목 : 승인된 구유재산의 관리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 ○ '93년도 구유재산 매각 결정된 23필지중 매각된 것은 16필지로 부진한 상태이며 과년도 분도 40건 중 34건만 매각처리</p> <p>(처리의견) •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연고권 있는 자가 신청해서 승인된 건인데 아직까지 계약체결하지 않은 것은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즉시 매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p>	
재 무 과	<p>제목 : 수입증지 위탁판매 수수료 과다지불</p> <p>(현황 및 문제점) ○ 수입증지 판매현황 '93. 1. 1~현재까지 총판매액 630,100천원 판매수수료 18,903천원이 시우회의 위탁판매수수료로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음.</p> <p>(처리의견) • 재무과의 직접 판매로 일시일용직 여직원 2명 채용하여 수수료지급과 경비 절감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재 무 1 과	<p>제목 : 과세표준액 조사책정의 문제</p> <p>(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와 토시등급의 설정 및 수정때에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사료됨.</p> <p>(처리의견) 1. 과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 하고 2. 표준지의 수를 늘려야 하고 3. 개별토지 조사자의 전문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재 무 1 과	<p>제목 : 불법과태료 절차에 관한 문제</p> <p>(현황 및 문제점) (건축과태료) • 불법 적발후 ① 시정지시 → ② 시정촉구 → ③ 단전·단수 ④ 고발 → ⑤ 과태료 예고 → ⑥ 부과 → ⑦ 독촉 → ⑧ 압류예고 → ⑨ 압류 등의 과정이 6개월이상 소요되므로 제남의 사유가 됨.</p> <p>(처리의견) • 9가지의 과정을 되도록 단축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요망됨.</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세 무 1 과	<p>제목 : 운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업무 수행</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사업자로서 압류를 받고도 재산권 이전때까지는 운수과태료가 체납상태로 있는 바 체납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임.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의 재산조사로 부동산 압류방법과 또는 차적조회로 주소기 확인하여 체납자의 번호관 회수방법등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망됨. 	
세 무 1 과	<p>제목 : 고지서 발부 후 발부대장 비치</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독촉장을 수차 발송했다고 하나 발송한 증빙자료가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됨.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납득 및 수긍할 수 있는 고지서발부 및 독촉장 발부대장을 비치해서 민원해소를 요망 • 근본적인 체납방지 방법은 세법을 고쳐서 주민세(소득할)는 국세청에서 취급하면 체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기관에 건의요망. 	
세 무 2 과	<p>제목 : 체납된 세금의 세수확보 문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부동산의 등기 또는 차량등록 압류를 한 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즉시 공매나 환가 처분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납세 의무를 기피내지 지연케 하는 좋지 못한 사례를 만들고 있음.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 등록 압류된 재산은 압류한 사실과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공매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뜻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공매처분하여 체납된 세금으로 충당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보는 물론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임. 	
세 무 2 과	<p>제목 : 장기 체납자의 정확한 자료 유지</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3~5년) 체납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장을 고지하면서 주소오류, 진출자정리착오(수납자, 감액된자), 고지서 송달불능 사례등 다수의 납세 민원을 발생케 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하여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체납자에게 매년 독촉장을 송부하였다하지만 송달 근거를 남기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요구시 적절히 대응 할 수 없어 세무행정을 불신케 하고 있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세무2과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인력을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토지관리과	<p>제목 :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과다 신청한 사례</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업자의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과다하게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소모 및 인력소모가 발생하고, 2. 연간 미교부 18,330건 1일 신청 61건 연간인력소모 2명 예산소모액(용지) 88,000원 3. 이에 따른 예산낭비, 민원장체, 불친절의 원인이 됨.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업 영등포구 지회의 회의소집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개선을 촉구토록 조치할 것. 	
토지관리과	<p>제목 : 토지공시지가 조사 공무원의 문제</p> <p>(현황 및 문제점)</p> <p>○ 토지관련 모든 조사에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말해서 국세,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 등에 활용하는데 각동의 담당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1명과 아르바이트학생 1명이 수천필지의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확정하여 결정하는 바, 너무나 미숙하고, 소홀함이 많아 구민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p>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관내 4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조사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든가 일반직이라도 졸속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수당을 책정하여 심도있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이로인해 구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토지관리과	<p>제목 : 문서 처리의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p>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접수일자 및 종합의견서 결재일자가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타과 서류에 있어서도 일자 기재 누락이 전체적으로 발견됨</p>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은 서류의 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정리와 접수 및 결재일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동 사 무 소	<p>제목 : 탁상 행정의 문제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동포구청(상급관청)에서 各洞에 1년에 수차에 걸쳐 여러가지 名目으로 多數의 인원을 動員시키는 사례는 实效性이 없는 탁상 행정식 숫자통계를 보고하는 사례</p>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이제는 전시효과적 동원은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숫자보고 등 형식적인 보고지시는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앞으로 지양하도록 할것. 例 : 국기미계양 숫자보고 	
동 사 무 소	<p>제목 : 각동의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p> <p>(현황 및 문제점)</p> <p>○ '93. 1. 29일 신길6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위조범에 속아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발생하여 6,0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와 우리구를 상대로 소송중인 사례.</p> <p>(처리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하면 인감신고 대장에 인감보호를 위한 본인의 사진부착요령, 특이사항 기재요구는 본인이 증명청에 출원하여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반드시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하나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동사무소 인감담당의 교육이 필요함.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4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29(월) ~ 12. 1(수)까지 (3일간)

3. 감시실시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 동사무소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위원회별	감사반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시민보사 위원회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홍선, 우일현, 윤태봉 조연제, 최락희, 최수영, 최준화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지방행정서기 구기모, 최한호 속기사 박근희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방법
11. 29 (월) 09:00~18:00	• 시민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산업과, 청소과.	영등포구청 3층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11. 30 (화) 09:00~20:00	• 시민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12. 1 (수) 09:00~17:00	• 시민국 • 보건소		

* 심야단속 및 현장확인

- 심야단속 : 11. 30 (화) 12:00~익일 03:00
 - 야간폐수, 분진, 소음 무단배출업소 및 심야 퇴폐 위생업소
- 현장확인 : 12. 1 (수) 13:00 ~ 15:00
 - 퇴폐 이미용업소 및 사우나, 안마시술소
 -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시설
 - 각종 방역약품 구비현황 점검

5.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시 민 국

소 관 과	실 시 내 용
각 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 각종 세출예산 공부정리 실태 ○ 각종 민원처리 실태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93 실낱, 중추절 위문품 구입내역 ○ 장애인 복지 및 지원현황 ○ 이웃돕기 모금현황 및 실적 ○ 부랑인 단속 예산 집행 현황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복지시설 인%허가 실태 ○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 결혼상담소 현황 및 신규허가 관계 ○ 노인봉사대 봉사료 지원현황 ○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 ○ '93 복지관 예산 및 신축 추진현황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제외)허가 및 심야 지도단속 현황 ○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제외)의 위생감찰 ○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유기장 및 공중위생업 허가관계 ○ 식품제조업소의 허가(신고) 및 감독 ○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등 감시단속

소 관 과	실 시 내 용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현황○ 지방농민과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석유류 판매업소 감독 현황○ 주유소 현황 및 허가 처리실태○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환 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공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배출 시설 신고처리 현황○ 도금업체 현황 및 자가 처리 도금업체 처리결과○ '93 대형 자가수거업체 행정처분 현황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관리실태○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쓰레기 보관용기 관리현황○ 대행업체 허가 현황○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건축허가와 관련 된 사항 제외)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진료업무 및 민원실의 운영○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방역 약품 사용현황○ 동별 방역약품 지원현황○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약품 구매 사항○ 가족계획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무료 순회 진료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 민 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	-------------------

각 실 과 제 목 :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현황 및 문제점)
 1993년 시민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중 67%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인사이동 등 전출입이 빈번하여 업무의 공백 및 근무의욕의 저하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의 결여 등이 문제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의견)
 빈번한 인사이동을 줄이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전문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할 것임.
 - 근무년한을 최소 2~3년으로 조성.

각 실 과 제 목 : '93 업무 추진실적 현황

(현황 및 문제점)
 시민국 소관 '93년 사업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및 업무의 편중으로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의견)
 사업의 조기시행 및 예산의 적정집행을 통하여 미집행사업이 발생되어 불용액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 회 복 지 과 제 목 : 부랑인단속 예산집행 현황

(현황 및 문제점)
 부랑인단속 일용인부 사용에 있어 예산상에는 2인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인만 상근인원으로 확보, 인부임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근 거>

계	7,686	산 출 기 초
급량비	600	2,500*10일*2명*12월
국내여비	1,296	54,000*2명*12월
재료비	5,790	193,000*2명*150일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사회복지과 (시정 및 처리의견)
 부랑인단속 일용인부 일당이 현실적인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에 편성된 2명 일용인부를 사용치 못하고 1인의 상근인부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바 상부의 건의 및 충분한 예산확보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가정복지과 제 목 : 예산 편성 및 요구사항
 (현황 및 문제점)
 '93년도 가정복지사업에 있어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무계획한 업무추진으로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치 못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미집행 예산내역 ('93. 11월 현재) 단위 : (천원)

시설비	533,000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40,000
보상금	82,000
특판비	8,000
계	863,000

(시정 및 처리의견)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93년도와 같이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가정복지과 제 목 : 복지관 신축공사 추진현황
 (현황 및 문제점)
 복지사업으로 하는 신축공사의 발주가 늦어 착공이 늦어질 뿐만아니라 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로 공사가 부진하고 12월 동절기에 조급한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

(시정 및 처리의견)
 적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11월초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 목 : 유아 복지시설 인허가 실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놀이방 및 어린이방 운영신고 및 허가제가 너무 많은 규제사항으로 인해 인허가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가정복지과	<p>(시정 및 처리의견)</p> <p>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제보다는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아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등에 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위 생 과	<p>제 목 : 위생업소 심야단속 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위생과 심야단속 직원이 6명으로 편성되어 22:00부터 02:00~04:00까지 근무한 후 익일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말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 감당키 어려우며 미온적 민원처리 또는 업무지연 등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p> <p>위생담당직원은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중 위생분야 지도 점검만 시키고 심야단속업무를 경찰로 완전 업무이관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업무집행을 함으로써 불친절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함.</p>
위 생 과	<p>제 목 : 위생업소 단속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위생업소단속시 일시적인 실적위주의 단속을 함으로써 일부 성실한 업주들의 생계 위협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p> <p>행정편의주의적인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교육 및 계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자체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위 생 과	<p>제 목 :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 처리건</p> <p>(현황 및 문제점)</p> <p>식품위생업소의 허가취소 처리는 충분한 조사 및 실정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가지의 위법사항이 통보됨으로써 법규에 의하여 당연 취소처리는 규제행정의 표본이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p> <p>'93. 9. 1.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통보를 받은 영등포구청은 '93. 9. 6~9. 16. 업소측의 소명기간 및 '93. 10. 19. 허가취소일까지 1개월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측의 출두 및 소명이 없다고해서 현지답사 및 전화확인 한번없이 경찰서의 지적통보만으로 영업행위를 취소(허가취소)했다함은 적극적인 공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전화확인만이라도 취하여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산 업 과	<p>제 목 : 식품 요식업소 위생단속</p> <p>(현황 및 문제점) 식품 및 요식업소의 감독 및 제규정 이행을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염소탕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허가만을 내주고 지난 1년간 지도감독 및 위생단속을 실시치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철저한 지도감독 및 위생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된 업소에는 폐업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p>
산 업 과	<p>제 목 :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보면 1. 준공업지역 도시형업종 2. 준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 3. 비공업지역 도시형업종 4. 비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 이상 4단계 차원에서 편중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영등포구 22개동 중 3개동(문래동, 당산동, 양평동)에만 융자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동에는 중소기업자금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융자신청 건수에 대한 해당 순위를 보면 1순위인 준공업지역 도시형업종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p> <p>(시정 및 처리의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만큼, 관내 전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의 정확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른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p> <p>제 목 : 도시가스 설치융자금 지원현황</p> <p>(현황 및 문제점) 도시가스 융자예산은 총 8억에 융자신청자는 16억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 공급이 맞지 않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 융자신청자를 사전에 보다 정확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각동단위로 신청을 받는 등 균등한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산 업 과	<p>제 목 : 지방농민과의 자매결연</p> <p>(현황 및 문제점) 지방농협과 각 동사무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인 쌀을 비롯하여 배추, 야채 등을 동사무소에서 알선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산 업 과	<p>(시정 및 처리의견)</p> <p>양곡관리법 및 유통질서를 위하여 쌀만은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제외하였으면 함. (선의의 취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나 유통질서가 무너짐)</p>
환 경 과	<p>제 목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48평 일반대중음식점, 73평이상 숙박업 및 안마시술소, 목욕탕 115평이상 병원, 의원 등의 물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을 조사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건물 소유주에게 일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개별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시정 및 처리의견)</p> <p>실제의 건물소유주 및 각각의 환경오염유발 개별업소에 대하여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제 목 : 환경오염 방지분야</p> <p>(현황 및 문제점)</p> <p>영동포 관내의 환경오염도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이 병행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및 노후장비의 교체, 또는 신규장비의 구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으로 환경오염방지에 문제점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p> <p>'94년도에는 우선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함에 있어 예산의 적절한 요구 및 확보를 통하여 환경공해방지에 최선을 경주바람.</p>
환 경 과	<p>제 목 : 특정유독물 발생업체 단속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영동포 관내 유일한 준공업지역인 문래권, 양평권에 48군대 도금공장은 전문위탁업체를 통하여 독극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위탁업체에서는 처리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하수구를 통하여 무단방출하고 있어 환경오염 및 폐수 처리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빗데리교환센터, 세차장, 차량경정비센터 등 업소들도 일반하수구를 통하여 폐유 및 유독공해물질 등을 무단 방출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p> <p>현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꾸준한 지도, 계몽을 병행하여 행정적 처벌기준 강화 및 심야 불시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청 소 과 제 목 : 보상금 및 특판비 예산집행 현황

(현황 및 문제점)

보상금 및 특판비 예산중 본 예산이 과다채정되어 예산심의시 삭감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사업계획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근 거>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집 행 액	미 집 행 액
홍 보 비	14,000	13,552	448
전 단 비	775	775	-
리 후 렛 비	4,375	2,212	2,163
재 활용 수집 장려금	50,201	25,857	24,344
특별 근무 청소원 격려	38,000	8,680	29,310
모 범 시 민 격 려	8,000	-	8,000
계	115,351	51,076	64,265

(시정 및 처리의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검토, 예산 적정편성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청 소 과 제 목 : 관서운영비 예산집행 현황

(현황 및 문제점)

관서운영비중 청소차량 보험료를 정확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당한 예산을 요구 집행한 사례가 있음.

<근 거>

단위 : 천원

대 상	총 대수	본 예산		'93년 구입		집 행		미 집행
		대수	금 액	대수	금액	대수	금 액	
청 소 차 량 보 험 료	75	71 (70)	36,570	5		75	36,570	-

(시정 및 처리의견)

정확한 예산산출근거를 통하여 예산을 책정 집행 하여야 할 것임.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청 소 과	<p>제 목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운용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 청소사업추진중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운영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무계획하게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타사업 추진에 예산 부족등 예산 편성상의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근 거〉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예산</th> <th style="width: 15%;">집행액</th> <th style="width: 15%;">미 집 행 액</th> <th style="width: 15%;">11, 12 월 예 상 액</th> <th style="width: 15%;">불 용 액 (이 월 액)</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59,701</td> <td style="text-align: center;">83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26,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6,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00</td> <td></td> </tr> </tbody> </table> <p>(시정 및 처리의견)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의 과다책정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제 목 :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보관함의 관리실태</p> <p>(현황 및 문제점) 재활용품 분리 수거보관함을 제작하여(일반주택 보관용기 : 3,276세트, 아파트지역 보관용기 : 266세트) 아파트 및 주거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나, 시민의 이용을 저조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 및 단순한 전시행정의 일례가 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의견) 각 동단위 재활용추진 협의회를 두고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계도 및 관리대책을 수립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됨.</p> <p>제 목 : 정확조 과태료 부과</p> <p>(현황 및 문제점) 정확조 청소 미필자에 대하여 '92년도 10월달 240여건의 과태료를 미납한자가 발생하였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바는 있으나 수납이 부진함. 또한 '93년도는 500인 이하의 정확조 청소 미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p> <p>(시정 및 처리의견) '92년도, '93년도 정확조 청소 미필자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수납하고 과태료 부과가 요망됨.</p>	예산	집행액	미 집 행 액	11, 12 월 예 상 액	불 용 액 (이 월 액)	비 고	1,259,701	833,000	426,000	166,000	260,000	
예산	집행액	미 집 행 액	11, 12 월 예 상 액	불 용 액 (이 월 액)	비 고								
1,259,701	833,000	426,000	166,000	260,000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청 소 과	<p>제 목 :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시설</p> <p>(현황 및 문제점) 418명의 환경미화원이 23개의 휴게실을 사용(평균 1개 휴게실 10~20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휴게실의 냉·온 샤워 및 냉·난방처리가 열악함.</p> <p>(시정 및 처리의견) 혹한을 앞두고 휴게실의 자체 점검 실시 및 정비계획을 세워 시급히 시설 보강하기 바람.</p>
보 건 소	<p>제 목 : 관내 안마 시술소(9개소) 운영실태</p> <p>(현황 및 문제점) 장애자(맹인)의 고용증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법적으로는 안마사 10명당 보조원 1/2명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이 이를 악용, 장애인 안마사를 불모로 다수의 보조원을 고용하여 매춘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행정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소내 전과자를 두고 공갈, 협박 등 지도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p> <p>(시정 및 처리의견)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 예방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합동단속 실시 및 행정규제의 강화 등 강력한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됨.</p>

7. 건 의 사 항

소 관 과	건 의 사 항
사 회 복 지 과	<p>제 목 : 이웃돕기성금 운용에 관한 건의사항</p> <p>현재 이웃돕기성금을 기탁받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금 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진 않으나, 주민의 정성과 마음으로 조성되는 성금이 보다 의미있게 주민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그간은 일선 동장이 주민의 건의를 수렴하여 또는 구호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지원하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갑자기 재해를 당하였을 때 생계비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당부 드립니다.</p> <p>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본 바 미진하였던 지원실적이 점차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관청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복지 행정을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 스스로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p>
위 생 과	<p>제 목 : 현행 위반 위생업소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p> <p>(현황 및 문제점)</p> <p>위반 위생업소 적출시 자체, 타부서(주로 경찰서)의 이첩에 따른 행정처분시 이중처벌(행정벌, 형사벌)하고 있어 위생업소 업주들의 이중부담으로 이의 시정을 요하는 방안.</p> <p><사 례 1> 자체단속 적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후 경찰서에 통보 -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 검찰청에서 벌금 부과 <p><사 례 2> 타부서(경찰서) 적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에서 벌금부과 -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 행정처분청인 구청에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처분할시 이중부담. <p>(개선방안)</p> <p>현행 식품위생법은 이중처벌로(행정벌, 형사벌) 되어 있으나 행정처벌, 형사처벌중 1개 법규만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해서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안.</p>

8. 기타 특기사항

○ 심야단속 및 위생업소, 복리시설 현장확인

확인일시	확인대상	소재지	확인자 및 임회자	확인결과
'93. 12. 1 00:00~ 03:00	미원 롯데삼강 영등포 중앙통 일대	대림3동 문래1동	김형수의원 김형기의원 최수영의원 (시민국장, 환경지도계장, 환경기사 임회)	분진·소음·공해 무단배출 여부 점검, 폐수수질검사(PH, 탁도 등) 점검. 현장자동측 정계로 확인한 결과 수질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양 호한 편임.
'93. 12. 1 13:30~ 15:30	환경미화원 복리시설	대림1동 신길4동 여의도동 등	김형수의원 최락희의원 서홍선의원 (청소과장, 작업계장 임회)	휴게시설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냉·온샤워 및 냉· 난방 시설은 시급히 시설보 강이 필요함.
'93. 12. 1 13:30~ 15:30	사우나 안마시술소	여의동	김형기의원 김진국의원 윤태봉의원 조연제의원 (위생과장, 직원 1명 임회)	청결상태, 위생상태 불법 안 마시술여부 점검. 위생상태 등 불법행위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계속 지 도점검이 요망됨.
'93. 12. 1 13:00~ 15:30	동사무소	신길1동의 5개 동	우일현의원 (방역계장임회)	방역약품 비치 등 점검. 대체로 양호함.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4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29 (월) ~ 12. 1 (수)까지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각호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대상부서별 일시, 장소, 방법 등 기타)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사 무 보 조 공 무 원	비 고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위원장 : 김명환 간 사 : 안주영 권혁필, 배기환 김동기, 심정기 양운섭, 최규락 이용주, 이중식 이윤중	도 시 정 비 국 건 설 국	'92. 11. 29. (월) 09:00-17:00 '92. 11. 30. (화) 09:00-17:00 '92. 12. 1. (수) 09:00-17:00 ※ 감사실별로 필요시 감사시간연장	영 등 포 구 청 감 사 실	• 보고 • 자료 확인 • 질의 답변	지방 행 정 서 기 김진성 지방 행 정 서 기 최광묵 속 기 사 정미연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도시정비국

과 별	감 사 사 항	비 고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라이프상가 불법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 '93년도 저소득층 전세임자금 지원현황 및 '90~'91년 전세임자금 상환 현황 ○ 경제기획원 조합주택 준공에 따른 조합원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법적 요건 ○ 입지심의에 관한 사항 	
도 시 정 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공공용지 확보면적 및 비율확인 ○ 여의도광장 선전탑 광고물 허가 사항 ○ 영등포역앞 한덕생명 광고탑 설치 경위 ○ 당산동소재 농양물탱장 등에 대한 불법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지 역 교 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과태료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택시 차고지에 관한 사항 ○ 관내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건축물 신고와 관련한 사항 ○ 신세계, 롯데백화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사 점검현황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93 영선공사 현황 ○ 영신교회(당산2동 소재) 옥탑에 관한 사항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도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 	

○ 건 설 국

과 별	감 사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 주차목적 도로점용허가 처리 적정 여부 ○ 가로정비업무 연간 예산지출 내역 (용역비 등) ○ 유허가 건물 철거관련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관계 ○ 특별판공비 지급내역 ○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통로 사용료 감액처분에 따른 경위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사업 및 계약관계 (19건) ○ 도로무단굴착 단속현황 ○ 도로굴착 복구비 미징수분 현황 ○ 신길6동 4077번지 등 도로복구 현황 조사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한 사항 ○ 하수공사(영등포2동 72번지 일대 외 2건) 현황 ○ 시설관리 유지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춘기 조경공사 시행사항 및 그와 관련한 현장 확인 ○ 공원조성 보상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주 택 과	<p>제 목 :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업무 위법처리</p> <p>(현황 및 문제점)</p> <p>○ '93. 10. 8 영등포구 양평동 161-5 소재 삼근주택(서정환)이 제출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첫째, 등록서류에 흠이 있었고 둘째, 기술인력(건축기사)채용여부 또한 사실확인 없이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셋째, 동 등록업무 처리와 관련 서류보완 미이행에 대하여 '93. 10. 17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처리의견)</p> <p>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훈계코자함.</p>	
주 택 과	<p>제 목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부적점</p> <p>(현황 및 문제점)</p> <p>○ '93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바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관서운영비중 차량등록검사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교 통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처리의견)</p> <p>명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과목 시정 요망.</p>	
도시정비과	<p>제 목 : 불법 광고물 방치</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동 618-464 영등포역앞 냉각탑 가림막 이용 불법 광고물은 (주) 오상기획(대표 : 이예호)에서 '92년 7월 1일 한덕생명 상호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바 있으나, 10개월여 방치하고 있다가 '93년 5월 21일 구청장 특명지시가 있어 비로소 '93년 7월 1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200,000원 부과만 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p> <p>(처리의견)</p> <p>관내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망됨</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지역교통과	<p>제 목 : 노상주차장 지도감독 소홀</p> <p>(현황 및 문제점)</p> <p>○ 주차장이 안고 있는 주변환경의 불량과 주차방법의 무질서는 시설의 보다 많은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절대부족의 주차시설을 감안할 때 주차시설 확충과 같은 비중으로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됨.</p> <p>(처리의견)</p> <p>주차장 관리인 또는 소유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월1회) 실시 등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바람.</p>	
건 축 과	<p>제 목 : 건축허가대장 관리 부적절</p> <p>(현황 및 문제점)</p> <p>○ '93년도 건축허가대장을 확인한 바, 착공일자, 준공년월일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항목(칸)이 있음에도 착공신고서대장이라는 별도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 기록의 일목요연, 또는 효율성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p> <p>(처리의견)</p> <p>건축허가대장뿐만 아니라 구청산하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중복되는 모든 대장을 통·폐합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람.</p>	
건 축 과	<p>제 목 : 건축허가 지연 처리</p> <p>(현황 및 문제점)</p> <p>○ 새정부 출범이래, 시민들이 일선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되었다는 일반적인 추세에 배치되는, 아직도 법정처리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음.</p> <p><사례 1></p> <p>1993년 4월 26일 신길동426-2, 429-12 양 지상에 건축주 윤광수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6일간 방치되다가 동년 5월 3일 법정처리기간 마지막날, 민원인에게 지연처리 통보</p> <p><사례 2></p> <p>1993년 5월 4월 4일 도림동 32-11 지상에 건축주 한길만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지연처리 통보없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한 사실</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지 역 교 통 과	<p>(처리의견)</p> <p>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p>	
건 축 과	<p>제 목 : 불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철저</p> <p>(현황 및 문제점)</p> <p>○ 당산동 4가 32-6 영신교회 신축건물과 관련, 동 건물옥상에 약 20m 높이의 불법공작물 등 관내 신규 및 기존불법 공작물에 대한 행정대응이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적절히 진행되고 있지 못함.</p> <p>(처리의견)</p> <p>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아울러 적법절차를 거쳐 대집행등 신속한 처리를 바람.</p>	
건 축 과	<p>제 목 : 신규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리 및 감독확행</p> <p>(현황 및 문제점)</p> <p>○ 1988년 이후 관내 미준공건물 건수 내역을 보면 총 700여동으로 매년 40~300%의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는 실정인 바, 이는 행정관청의 감독소홀 및 신축건물 주변 이해당사자 사이 적극적인 중재 중개로 야기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등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p> <p>(처리의견)</p> <p>필요하다면 관계법개정, 제도적 보완까지를 포함하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바람, 아울러 기존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도 검토 요망.</p>	
건 축 과	<p>제 목 : 건축민원 처리시 관계과와의 업무협조 소홀</p> <p>(현황 및 문제점)</p> <p>○ 대림1동 756-5호 대지 분할을 건축과에 신청하였으나, 지상 일부에 불법가설물이 있다하여 반려처리하는 등 경직된 민원처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p> <p>(처리의견)</p> <p>위의 경우 민원에게 지연처리 통보후 주택과와 업무협의하여 불법건물 철거후 대지분할건을 원만히 처리하는 유연한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됨.</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지 적 과	<p>제 목 : 지적도상 경계선 접합지 동일축척도 변경요망</p> <p>(현황 및 문제점)</p> <p>○ 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한필지 토지가 축척이 상이한 도면으로 나누어져(1:500 또는 1:1200)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음.</p> <p>(처리의견)</p> <p>동일한 축척비율의 지적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 검토 요망</p>	
건 설 국	<p>제 목 : 도시계획도로 신규개설 공사에 따른 주민보상 시기 조정에 관한 제도개선 의뢰</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7가 5-142일대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공사가 년도 폐쇄기가 가까워지는 '93. 12. 1 현재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제도 개선차원에서 이의 시정을 촉구함.</p> <p>- 도시 계획 도로 신규 공사 등을 시작하면서 보상이 완료되기전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와 거의 동시에 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행으로 몇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바,</p> <p>첫째, 정신적으로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철거 주민과 원만한 타협 모색도 어렵게 할 뿐만아니라,</p> <p>둘째, 구청담당부서(보상 및 공사시행)가 몇개씩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 야기되는 업무폭주도 무시되어서는 안되며,</p> <p>셋째, 작금의 일반적인 추세인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선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p> <p>(처리의견)</p> <p>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을 이해하고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선보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p>	
건설관리과	<p>제 목 : 인도상 전주 이설</p> <p>(현황 및 문제점)</p> <p>○ 대림3동 관내 30m 대로의 인도 가운데 전주가 있어 통행 주민에게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p> <p>(처리의견)</p> <p>빠른 시일내에 이설 요망</p> <p>※ 사진 따로붙임</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토 목 과	<p>제 목 :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소홀</p> <p>(현황 및 문제점)</p> <p>○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소 단일기관의 미징수액이 현년도 2억여원, 과년도 5억 3천만여원 등 총 7억 3천만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 자세 결여로 지방재정 수입을 어렵게한 사실이 있음.</p> <p>(처리의견)</p> <p>잘못된 부분을 규명하고 신속히 징수 할수 있는 방안 강구</p>	
토 목 과	<p>제 목 : 건널목 맹인용 점자 보도블럭 시설 효용제고</p> <p>(현황 및 문제점)</p> <p>○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로와 서강대로 로타리지점, 영등포구청 브릭과 구의회 브릭을 있는 건널목 맹인용 점자 보도블럭 시설을 현장 확인한 바, 시설자체를 무용하게 하는 전봇대가 건널목 직전에 설치돼 있을뿐만 아니라 건널목 입구가 보도보다 20-30cm 가라앉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처리의견)</p> <p>시설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구를 봉토하여 보도와 지면을 같게 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봇대 이설공사도 한전과 협의, 적의 처리하기 바람.</p>	
토 목 과	<p>제 목 : 도로복구 공사 소홀</p> <p>(현황 및 문제점)</p> <p>○ 신길동 3995, 4001번지 일대 가스공사 이후 도로복구 공사가 당초의 15전의 두께와 같이 포장해야 함에도, 10전도 못되게 포장하는 등 부실한 공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의견)</p> <p>관내 도로복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신길동 3995번지 일대 도로복구 공사는 재시공을 적극 검토요망</p>	
하 수 과	<p>제 목 : 하수관망 도면의 효율적 이용 촉구</p> <p>(현황 및 문제점)</p> <p>○ 하수도 공사의 하수관망 도면을 보면 매설된 하수도관의 규격만 기록되고 설치년월일이 없어 차후 관 교체공사시 등에는 하수관망 도면이 쓸모없는 종이구실 밖에 못할 실정임.</p>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하 수 과	(처리의견) 아래 “예”를 참고해서 하수도 관망도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예” '93(년) - 9(월) - PVC(재질) - 450(구경)	
하 수 과	제 목 : 하수도 공사후 노면침하 현상 방지대책 촉구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 공사후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공사를 지방서와 같이 작업하지 않음으로 노면침하가 관내 전지역에 걸쳐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처리의견) 가스공사, 전선매설공사, 하수도공사 등 도로굴착후 전반적인 복구공사가 당초 노면상태로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으니 토목과와 협의, 거시적 대책 강구 요망.	
공 원 녹 지 과	제 목 : 예산집행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중 녹지관리 기본 경상비중 재료비 기타 항목의 국민식수 묘목구입비가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묘목당 4,600원으로 2,600주를 구입하게 작성된 반면, 실제구입은 그 8배에 달하는 35,000원부터 3,500원에 이르는 단가계약으로 870주만 구입한 사실이 있음. (처리의견)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거나,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다면 집행을 남용한 경우로서 잘못된 부분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요망	
공 원 녹 지 과	제 목 : 녹지대 정비일지 관리 소홀 (현황 및 문제점) ○ 여의도광장 및 양남로타리 녹지대등 녹지대의 정비 및 관리를 책임맡고 있는 일부직원들이 정비감독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처리의견) 담당과장은 직원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서영동1-22	<p>제 목 : 각동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예산배정 불합리</p> <p>(현황 및 문제점)</p> <p>○ 각동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예산배정을 천편일률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동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다른 동은 배정예산의 30%도 집행치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p> <p>(처리의견)</p> <p>동사무소 소관 소규모 공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p>	
서영동1-22	<p>제 목 : 각동신고 처리로 가능한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p> <p>(현황 및 문제점)</p> <p>○ 여의동을 제외한 전 동의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음으로 불법건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의견)</p> <p>조속한 시일내에 재점검 및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에 대하여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토록 하기 바람.</p>	
서영동1-22	<p>제 목 : 동건축 담당 직원의 전문화 촉구</p> <p>(현황 및 문제점)</p> <p>○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는 일정 크기내의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일반행정직으로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업무소홀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고 있음.</p> <p>(총 22명중 건축직3, 토목직3, 일반직16명)</p> <p>(처리의견)</p> <p>필요하다면 상급관청에 건의해서라도 각동 소속 건축담당 직원의 전문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기 타 (세무2과)	<p>제 목 : 차량취득후 계약변경으로 인한 등록세 과세 표준 적용의 불합리</p> <p>(현황 및 문제점)</p> <p>○ 차량 신규 구입시 신규등록 이전 할부계약을 하였다가 사정변경으로 현금일시불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감액요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p>	도시건설 소관부서 감사중 나타난 타부서 감사사항

소 관 부 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p>(처리의견)</p> <p>위와 같은 경우의 감액요인을 계약변경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차량등록세법 개정 촉구 요함.</p>	
<p>기 타 (재무과)</p>	<p>제 목 : 국·공유지 매각계약 미체결·사용허가 부적정</p> <p>(현황 및 문제점)</p> <p>○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국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1/2 이상 납부 및 계약 체결후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에 사용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음.</p> <p>(처리의견)</p> <p>관계 규정의 숙지 및 교육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1. 1992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액은 **77,136,102,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316,362,637** 원이며
- 세출예산액은 **77,136,102,000** 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3,221,574,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729,362,679**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13,586,999,958** 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사고이월 **3,753,223,86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29,544,68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04,231,418** 원이다.

2. 1992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75,328,584,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741,784,955** 원이며
- 세출예산액은 **75,328,584,000** 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1,414,056,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466,906,699**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13,274,878,256** 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한다.
 - 사고이월 **3,753,223,860** 원

- 보조금 집행잔액 **29,544,68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492,109,716** 원이다.

3. 1992년도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 상황은

- 세입예산 **1,807,518,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4,577,682** 원이며
- 세출예산 **1,807,518,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2,455,98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312,121,702** 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12,121,702** 원이다.

나.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 **1,352,518,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9,714,901** 원이며
- 세출예산 **1,352,518,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7,455,98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252,258,921** 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52,258,921** 원이다.

2)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 **455,000,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862,781** 원이며

- 매출예산 455,000,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000,000 원이다.
- 그 차입잔액은 59,862,781 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9,862,781 원이다.

세입결산총괄

1. 일반회계

구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	
			수납총액 (1)	과오납반환금 (2)
계	75,328,584,000	87,860,931,741	80,873,510,065	13,755,150
지방세	34,336,968,000	37,441,464,762	35,060,693,902	101,914,890
보통세	27,076,950,000	28,488,111,060	27,477,163,485	70,778,720
목적세	6,679,918,000	7,091,841,802	7,086,644,722	
과년도수입	581,000,000	1,861,511,900	56,865,695	31,130,170
세외수입	20,448,765,000	30,707,069,679	26,070,448,803	29,840,160
경상직수입	8,064,563,000	9,116,140,916	8,598,155,284	21,939,110
임시직수입	12,364,202,000	21,590,928,733	17,472,298,519	7,847,050
지방교부세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지방교부세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보조금	3,902,944,000	3,072,397,300	3,072,397,300	
국고보조금	3,902,944,000	3,072,397,300	3,072,397,300	
교부금				

(단위: 원)

액	물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나) - (다+라)	비율		비고
			(다) / (가)	(다) / (나)	
실제수납액 (다 = 1 - 2)					
80,741,784,965	134,776,520	6,984,370,266	107.2	91.9	
34,988,779,012	82,820,840	2,369,864,910	101.9	98.4	
27,406,384,765		1,081,726,295	101.2	104.4	
7,086,644,722		5,197,080	106.1	100.2	
46,749,525	82,820,840	1,282,941,535	85.3	26.7	
26,040,608,643	51,955,680	4,614,506,356	127.3	84.8	
8,576,162,174		539,978,772	106.3	94.1	
17,464,446,469	51,955,680	4,074,526,584	141.0	80.9	
16,640,000,000			100	100	
16,640,000,000			100	100	
3,072,397,300			78.7	100	
3,072,397,300			78.7	100	

세출예산총괄

1. 일반회계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비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총계	75,328,584,000	519,344,000 △ 519,344,000	17,729,000 △ 17,729,000	6,085,472,000
의회비	1,228,609,000	14,434,000	5,694,000 △ 5,694,400	
일반행정비	35,357,028,000	318,729,000	2,535,000 △ 2,535,000	2,623,508,000
사회복지비	17,653,912,000	170,000,000	5,000,000 △ 5,000,000	882,557,000
산업경제비	47,656,000			
지역개발비	19,356,411,000	16,181,000	2,913,000 △ 2,913,000	2,579,407,000
지역방위비	183,423,000		1,587,000 △ 1,587,000	
지원제비	652,794,000			
예비비	848,751,000	△ 519,344,000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81,414,056,000	71,171,696,189	67,466,906,699	(48,434,390) 3,704,789,470	10,242,359,831
1,243,043,000	845,382,745	845,382,745		397,660,225
38,299,265,000	34,438,165,507	34,367,544,507	70,621,000	3,851,099,498
18,706,469,000	15,725,195,837	15,170,153,357	555,042,480	2,981,273,163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1,951,999,000	1,932,318,199	16,241,192,209	(48,434,390) 3,079,125,990	2,631,680,801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652,794,000	652,500,000	652,500,000		294,000
329,407,000				329,407,000

2. 부 별 회 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예 산 성 립 후 증 감 액		
장	관		예 비 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총 계		1,807,518,000	-	-	-
의료보호기금		1,352,518,000			
	의료시혜사업비	1,348,678,000			
	기금운영비	3,840,000			
세비운사업비		455,000,000			
	세비운소득사업	455,000,000			

(단위: 원)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잔액이행액	잔 용 액
1,807,518,000	1,262,455,980	1,262,455,980	0	545,062,020
1,352,518,000	937,455,980	937,455,980	0	415,062,020
1,348,678,000	933,885,980	933,885,980	0	414,792,020
3,840,000	3,570,000	3,570,000	0	270,000
455,000,000	325,000,000	325,000,000	0	130,000,000
455,000,000	325,000,000	325,000,000	0	130,000,000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회 계 명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세	
				계	계
합 계	82,316,362,637	68,729,362,679	13,586,999,958	3,782,768,540	
일 반 회 계	80,741,784,955	67,466,906,699	13,274,878,256	3,782,768,540	
특 별 회 계	1,574,577,682	1,262,455,980	312,121,702		
의료보호기금	1,189,714,901	937,455,980	252,258,921		
새마을소득금 지원사업비	384,862,781	325,000,000	59,862,781		
국민주택비					
주택재개발비					
하수처리장비					
유도도로비					
주차장시설비					
도시개발사업비					

(단위: 원)

계 잉 여 금 처 분 내 역					순세계잉여금 이 월	현년 도 채무 상환
다 음 년 도 이 월				보조금사용 전 액		
소 계	평시 이월	사 고 이 월 원인행위분	미 필 분			
3,753,223,860	-	3,704,789,470	48,434,390	29,544,680	9,804,231,418	0
3,753,223,860	-	3,704,789,470	48,434,390	29,544,680	9,492,109,716	0
					312,121,702	0
					252,258,921	0
					59,862,781	0

관 별 조 서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장	관			
지방세수입		34,336,968,000	37,441,464,762	34,988,779,012
	지방세	34,336,968,000	37,441,464,762	34,988,779,012
세외수입		20,448,765,000	30,707,069,679	26,040,608,643
	경상적세외수입	8,064,563,000	9,116,140,946	8,576,162,174
	임시적세외수입	12,384,202,000	21,590,928,733	17,464,446,469
보조금		3,902,944,000	3,072,397,300	3,072,397,300
	보조금	1,587,845,000	999,244,730	999,244,730
	재정보조금	2,315,099,000	2,073,152,570	2,073,152,570
조정교부금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조정교부금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총 계		75,328,584,000	87,860,931,741	80,741,784,955

(단위: 원)

불납결산액	미수납액	증 감		비 고
		예산액대	징수결정액대	
82,820,840	2,369,864,910	651,811,012	△ 2,452,685,750	
82,820,840	2,369,864,910	651,811,012	△ 2,452,685,750	
51,965,680	4,614,505,356	5,591,843,643	△ 4,666,461,036	
	539,978,772	511,599,174	△ 539,978,772	
51,965,680	4,074,526,584	5,080,244,469	△ 4,126,482,264	
		△ 830,546,700		
		△ 588,600,270		
		△ 241,946,430		
		93,000	0	
		93,000	0	
14,776,520	6,981,370,366	5,413,200,955	△ 7,119,146,786	

목별조서

예산과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34,336,968,000	37,441,464,762	34,988,779,012
	110		지방세	34,336,968,000	37,441,464,762	34,988,779,012
		111	보통세	27,076,950,000	28,488,111,060	27,406,384,765
			111-03 면허세	2,843,444,000	2,864,606,090	2,273,279,485
			111-05 재산세	6,861,168,000	7,498,893,380	7,184,893,100
			111-10 종합토지세	17,372,338,000	18,124,611,590	17,848,212,180
		112	목적세	6,679,018,000	7,091,841,802	7,086,644,722
			112-03 사업소세	6,679,018,000	7,091,841,802	7,086,644,722
		113	과년도수입	581,000,000	1,861,511,900	495,749,525
			113-01 과년도지방세수입	581,000,000	1,861,511,900	495,749,525
200			세외수입	20,448,765,000	30,707,069,679	26,040,608,643
	210		경상적세외수입	8,064,563,000	9,116,140,946	8,576,162,174
		211	재산임대수입	50,471,000	25,296,825	25,296,825

(단위: 원.)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사(예산대비) 유(증) 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82,820,840	2,369,864,910	651,811,012	△ 2,452,685,750	
82,820,840	2,369,864,910	651,811,012	△ 2,452,685,750	
	1,081,726,295	329,434,765	△ 1,081,726,295	
	491,326,605	△ 470,164,515	△ 491,326,605	
	314,000,280	323,725,100	△ 314,000,280	
	276,399,410	475,874,180	△ 276,399,410	
	5,197,080	407,626,722	△ 5,197,080	
	5,197,080	407,626,722	△ 5,197,080	
82,820,840	1,282,941,535	△ 85,250,475	△ 1,365,762,375	
82,820,840	1,282,941,535	△ 85,250,475	△ 1,365,762,375	
51,955,680	4,614,505,356	5,591,843,643	△ 4,666,461,036	
	539,978,772	511,599,174	△ 539,978,772	
	0	△ 25,174,175	0	

예산 과 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장	관	항	목			
		211-01	국유재산임대수입	20,000,000	3,728,490	3,728,490
		211-02	국유재산임대수입	30,471,000	21,568,335	21,568,335
		212	사용료수입	1,079,723,000	1,860,887,230	1,408,691,018
		212-01	도로사용료	1,029,011,000	1,754,964,360	1,339,944,618
		212-02	하천사용료	44,540,000	89,364,520	52,188,050
		212-03	농원사용료	6,172,000	16,558,350	16,558,350
		213	수수료수입	1,942,202,000	2,072,136,664	1,984,354,164
		213-02	보건소수입	124,459,000	154,200,070	154,200,070
		213-03	중저수입	689,710,000	657,200,000	657,200,000
		213-04	오물수거수수료	1,128,033,000	1,260,736,594	1,172,954,734
		215	징수교부금	4,692,167,000	4,765,573,290	4,765,573,290
		215-01	징수교부금	4,191,000,000	4,075,425,600	4,075,425,600
		215-02	기타 징수교부금	501,167,000	690,147,690	690,147,690

(단위: 원)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사(예산대비)유 증(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0	△ 16,271,510	0	
	0	△ 8,902,665	0	
	452,196,212	328,968,018	△ 452,196,212	
	415,019,742	310,933,618	△ 415,019,742	
	37,176,470	7,648,050	△ 37,176,470	
	0	10,386,350	0	
	87,782,560	42,152,104	△ 87,782,560	
	0	29,741,070	0	
	0	△ 32,510,000	0	
	87,782,560	44,921,034	△ 87,782,560	
	0	73,406,290	0	
	0	△ 115,574,400	0	
	0	188,980,690	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장	관	항	목			
		216	이자수입	300,000,000	392,246,937	392,246,937
			216-01 예금이자수입	300,000,000	392,246,937	392,246,937
		220	입시적세외수입	12,384,202,000	21,590,928,733	17,464,446,469
		221	재산매각수입	1,000,000,000	1,326,935,230	1,326,935,230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500,000,000	167,810,430	167,810,430
			221-02 국유재산매각수입	500,000,000	1,159,124,800	1,159,124,800
		222	전년도이월금	7,111,606,000	13,197,058,191	13,197,058,191
			222-01 순세계잉여금	7,111,606,000	13,197,058,191	13,197,058,191
		227	부담금	106,000,000	0	0
			227-06 기타부담금	106,000,000	0	0
		228	잡수입	3,652,996,000	4,671,859,336	2,692,307,448
			228-01 불용품매각대	2,000,000	10,799,400	10,799,400
			228-02 변상금	27,000,000	89,428,300	89,428,300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사(예산대비)유 (예산대비)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0	92,246,937	0	
	0	92,246,937	0	
51,955,680	4,074,526,584	5,080,244,469	△ 4,126,492,264	
	0	326,935,230	0	
	0	△ 332,189,570	0	
	0	659,124,800	0	
	0	6,085,452,191	0	
	0	6,085,452,191	0	
	0	△ 106,000,000	0	
	0	0	0	
	1,979,551,888	△ 961,688,552	△ 1,979,551,888	
	0	8,799,400	0	
	0	62,428,300	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장	관	항	목			
			228-03 위약금	4,000,000	30,549,578	30,549,578
			228-04 과태료	2,669,044,000	4,373,000,239	2,393,448,351
			228-05 체납처분수입	43,142,000	5,456,400	5,456,400
			228-08 기타잡수입	908,810,000	162,625,419	162,625,419
		229	과년도수입	512,600,000	2,395,075,976	248,145,600
			229-01 하천사용료	7,318,000	52,548,460	7,401,510
			229-02 기타사용료	27,282,000	361,083,633	87,860,520
			229-03 수수료	10,000,000	324,731,513	3,051,370
			229-04 재산수입		41,012,260	
			229-06 기타	468,000,000	1,615,690,110	149,832,200
400			보조금	3,902,944,000	3,072,397,300	3,072,397,300
	410		국비보조금	1,587,845,000	999,244,730	999,244,730
		413	사회복지비보조	1,180,611,000	604,526,730	604,526,730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 감		사유 (예산대비) 증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0	26,549,578	0	
	1,979,551,888	△ 275,595,649	△ 1,979,551,888	
	0	△ 37,685,600	0	
	0	△ 746,184,581	0	
51,955,680	2,094,974,636	△ 264,454,400	△ 2,146,930,376	
	45,146,960	83,510	△ 45,146,960	
	273,233,113	60,578,520	△ 273,233,113	
51,355,680	269,724,463	△ 6,948,630	△ 321,680,143	
	41,012,260		△ 41,012,260	
	1,465,857,910	△ 318,167,800	△ 1,465,857,910	
	0	△ 830,516,700	0	
	0	△ 588,600,270	0	
	0	△ 576,081,270	0	

예산과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장	관	항	목			
			413-01 사회복지비보조	1,180,611,000	604,526,730	604,526,730
		417	지역방위비	407,234,000	394,718,000	394,718,000
			417-01 지역방위비	407,234,000	394,718,000	394,718,000
		420	시비보조금	2,315,099,000	2,073,152,570	2,073,152,570
			422 사회복지비보조	570,099,000	315,367,170	315,367,170
			422-01 사회복지비보조	570,099,000	315,367,170	315,367,170
			421 민방위보조		3,785,400	3,785,400
			42 민방위보조		3,785,400	3,785,400
		421	재정보조금	1,745,000,000	1,745,000,000	1,745,000,000
			421-01 재정보조금	1,745,000,000	1,745,000,000	1,745,000,000
		500	조정교부금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511 조정교부금	16,639,907,000	16,640,000,000	16,640,000,000
			계	75,329,584,000	87,860,931,741	80,711,784,955

(단위: 원)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사(예산대비)유 (예산대비)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0	△ 576,084,270	0	
		△ 12,516,000	0	
	0	△ 12,516,000	0	
	0	△ 241,946,430	0	
		△ 254,731,830	0	
	0	△ 254,731,830	0	
		3,785,400	0	
	0	3,785,400	0	
		9,000,000	0	
	0	9,000,000	0	
		93,000	0	
	0	93,000	0	
134,776,530	6,984,370,366	5,413,200,955	△ 7,119,146,786	

예산과목 장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비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의회비	1,228,609,000	14,434,000	5,694,000 △ 5,694,000	
신거비	251,221,000			
의회운영비	977,388,000	14,434,000	5,694,000 △ 5,694,000	
일반행정비	35,357,028,000	318,729,000	2,535,000 △ 2,535,000	2,623,508,000
기획행정비	14,332,718,000	119,100,000		8,000,000
내무행정비	19,541,867,000	199,629,000		2,615,508,000
재무행정비	882,443,000			
사회복지비	17,653,912,000	170,000,000	5,000,000 △ 5,000,000	882,557,000
복지사업비	5,100,292,000	170,000,000		202,013,000
보건위생비	1,738,304,000		5,000,000 △ 5,000,000	
환경복지비	10,755,316,000			680,544,000
산업경제비	476,656,000			
산업경제비	47,656,000			
지역개발비	19,356,411,000	16,181,000	2,913,000 △ 2,913,000	2,579,407,000
건설사업비	18,258,306,000	16,181,000	2,913,000 △ 2,913,000	2,045,631,000
치수하수사업비	1,098,106,000			533,776,000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안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243,043,000	845,382,745	845,382,745		397,660,255
251,221,000				251,221,000
991,822,000	845,382,745	845,382,745		146,439,255
38,299,265,000	34,438,165,507	34,367,544,507	70,621,000	3,861,099,493
15,069,818,000	13,809,543,817	13,809,543,817		1,250,274,183
22,357,004,000	19,883,873,920	19,813,612,920	70,261,000	2,473,130,080
882,443,000	744,747,770	744,387,770	360,000	137,695,230
18,706,469,000	15,725,196,837	15,170,153,357	555,042,480	2,981,372,163
5,472,305,000	4,001,885,585	3,990,031,585	11,854,000	1,470,419,415
1,738,304,000	1,665,785,560	1,665,785,560		132,518,440
11,435,860,000	10,051,524,692	9,514,336,212	543,188,480	1,378,335,308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1,951,999,000	19,320,318,199	16,241,192,209	(48,434,330) 3,079,125,990	2,631,680,801
20,220,117,000	17,989,916,359	14,910,820,369	3,079,125,990	2,330,170,641
1,031,882,000	1,330,371,840	1,330,371,840		301,510,160

예산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장	관		예비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지역방위비	183,423,000		1,587,000 △ 1,587,000	
	민방위비	183,423,000		1,587,000 △ 1,587,000	
	지원계비	652,794,000			
	전출금	652,794,000			
	예비비	848,751,000	△ 519,344,000		
	예비비	848,751,000	△ 519,344,000		
	총 계	75,328,584,000	519,344,000 △ 519,344,000	17,729,000 △ 17,729,000	6,085,472,000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652,794,000	652,500,000	652,500,000		294,000
652,794,000	652,500,000	652,500,000		294,000
329,407,000				329,407,000
329,407,000				329,407,000
81,414,056,000	71,171,696,169	67,466,906,699	(48,434,390) 3,704,789,470	10,242,359,831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예 비 비	증 (△) 감	
장	관	항	세	목			전	용
의 회					1,228,608,000	14,434,000		
선 거 비					251,221,000			
구 선 거 비					251,221,000			
구 선 거 비					251,221,000			
수 당					320,000			
급 량 비					29,330,000			
일 용 잡 금					8,827,000			
국 내 여 비					11,312,000			
수용비및수수료					8,769,000			
정 보 비					10,320,000			
특별관공비					8,944,000			
공 공 요 금					660,000			
임 차 료					900,000			
차 량 비					390,000			
국가기관에대 한 위탁금					171,449,000			
의 회 운 영 비					977,388,000	14,434,000	△5,694,000	5,694,000
의 회 운 영					435,546,000	14,434,000	△5,694,000	5,694,000
의 정 관 료					168,081,000			5,694,000
수 당					59,400,000			
국 내 여 비					12,594,000			5,694,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 - C)	불용액 (A - B)	예산잔액 (A - C)
	1,243,043,000	845,382,745	845,382,745		397,660,255	397,660,255
	251,221,000	0	0		251,221,000	251,221,000
	251,221,000	0	0		251,221,000	251,221,000
	251,221,000	0	0		251,221,000	251,221,000
	320,000	0	0		320,000	320,000
	29,330,000	0	0		29,330,000	29,330,000
	8,827,000	0	0		8,827,000	8,827,000
	11,312,000	0	0		11,312,000	11,312,000
	8,769,000	0	0		8,769,000	8,769,000
	10,320,000	0	0		10,320,000	10,320,000
	8,944,000	0	0		8,944,000	8,944,000
	660,000	0	0		660,000	660,000
	900,000	0	0		900,000	900,000
	390,000	0	0		390,000	390,000
	171,449,000	0	0		171,449,000	171,449,000
	991,822,000	845,382,745	845,382,745		146,439,255	146,439,255
	444,380,000	407,587,835	407,587,835		42,392,165	42,392,165
	174,775,000	116,004,390	116,004,390		4,770,610	4,770,610
	59,400,000	59,070,000	59,070,000		330,000	330,000
	18,288,000	18,257,100	18,257,100		30,900	30,90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전	용
				특별판공비	93,600,000			
				공공요금	1,287,000			
				보상금	1,200,000			
				구의회운영	267,465,000	14,434,000	△5,594,000	
				수당	2,700,000			
				상용피부비	623,000			
				수용비및수수료	120,906,000		△5,594,000	
				특별판공비	15,000,000			
				공공요금	6,616,000			
				연료비	8,289,000			
				자산취득비	42,334,000	7,951,000		
				시설비	4,598,000	5,604,000		
				대수선비	25,800,000	879,000		
				관서당경비	40,599,000			
				사무국운영	541,842,000			
				사무국운영	541,842,000			
				급여	139,237,000			
				상여금	71,940,000			
				수당	14,409,000			
				정액수당	99,413,00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93,600,000	91,369,810	91,369,810		2,230,190	2,230,190
	1,287,000	307,490	307,490		979,520	979,520
	1,200,000	0	0		1,200,000	1,200,000
	276,205,000	239,583,445	239,583,445		37,621,555	37,621,555
	2,700,000	650,000	650,000		2,040,000	2,040,000
	623,000	559,500	559,500		63,500	63,500
	115,212,000	109,831,935	109,831,935		5,380,065	5,380,065
	15,000,000	11,451,150	11,451,150		3,548,850	3,548,850
	6,616,000	0	0		6,616,000	6,616,000
	8,289,000	5,510,400	5,510,400		2,778,600	2,778,600
	50,285,000	47,333,100	47,333,100		2,951,900	2,951,900
	10,202,000	9,859,580	9,859,580		342,420	342,420
	26,679,000	17,046,700	17,046,700		9,632,300	9,632,300
	40,599,000	36,331,080	36,331,080		4,267,920	4,267,920
	541,842,000	437,794,910	437,794,910		104,047,090	104,047,090
	541,842,000	437,794,910	437,794,910		104,047,090	104,047,090
	139,237,000	116,512,920	116,512,920		22,724,080	22,724,080
	71,940,000	56,509,250	56,509,250		15,430,750	15,430,750
	14,409,000	12,800,000	12,800,000		1,609,000	1,609,000
	99,413,000	77,474,330	77,474,330		21,938,670	21,938,670

역 산 과 목				예 산 액	예 비 비	증 (△) 감	
장	관	항	세 항			전	용
			일 용 갑 금	10,080,000			
			복 리 후 생 비	64,047,000			
			정 보 비	25,440,000			
			기관운영관공비	4,800,000			
			특별관공비	22,300,000			
			공 공 요 금	6,030,000			
			제 세 공 과 금	2,128,000			
			차 량 비	7,044,000			
			시설장비유지비	2,200,000			
			보 상 비	25,452,000			
			연금지급금	4,178,000			
			관서당경비	43,144,000			
			일 반 행 정 비	35,357,028,000	318,729,000		
			기 획 행 정 비	14,932,718,000	119,100,000		
			기 획 관 리	14,932,718,000	119,100,000		
			기 관 운 영 비	14,194,591,000	119,100,000		
			급 여	4,311,359,000			
			상 여 금	2,122,446,000			
			기 타 직 보 수	18,973,000	2,000,000		
			수 당	963,989,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잔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0,080,000	7,381,500	7,381,500		2,698,500	2,698,500
	64,047,000	50,462,900	50,462,900		13,584,100	13,584,100
	25,440,000	25,075,410	25,075,410		364,590	364,590
	4,800,000	4,751,610	4,751,610		48,390	48,390
	22,300,000	22,297,260	22,297,260		2,740	2,740
	6,030,000	2,539,210	2,539,210		3,490,790	3,490,790
	2,128,000	1,649,350	1,649,350		478,650	478,650
	7,044,000	5,859,210	5,859,210		1,184,790	1,184,790
	2,200,000	1,031,000	1,031,000		1,169,000	1,169,000
	25,452,000	22,265,060	22,265,060		3,186,940	3,186,940
	4,178,000	0	0		4,178,000	4,178,000
	43,144,000	31,185,900	31,185,900		11,958,100	11,958,100
	2,623,508,000	38,294,265,000	34,435,165,507	34,367,544,507	70,921,000	3,861,099,493
	8,000,000	15,059,818,000	13,809,543,817	13,809,543,817	1,250,274,183	1,250,274,183
	8,000,000	15,059,818,000	13,809,543,817	13,809,543,817	1,250,274,183	1,250,274,183
		14,213,091,000	13,189,919,250	13,189,919,250	1,123,771,750	1,123,771,750
		4,311,359,000	4,161,815,090	4,161,815,090	149,543,920	149,543,920
		2,122,446,000	2,043,447,010	2,043,447,010	78,998,990	78,998,990
		21,973,000	21,973,000	21,973,000	0	0
		963,989,000	677,040,020	677,040,020	286,948,980	286,948,98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정액수당	2,578,854,000	90,500,000		
			부리후생비	2,106,079,000	26,600,000		
			공공요금	59,383,000			
			보상금	823,456,000			
			연금지급금	149,788,000			
			자산취득비	22,250,000			
			관서당경비	1,037,014,000			
			기				
			획	210,965,000			
			예				
			산				
			수	5,800,000			
			당				
			급	6,000,000			
			량				
			비				
			일	5,889,000			
			용				
			잡				
			금				
			수	102,711,000			
			용				
			비				
			및				
			수				
			수				
			료				
			정	37,540,000			
			보				
			비				
			특	26,500,000			
			별				
			관				
			공				
			비				
			제	5,000,000			
			세				
			공				
			과				
			금				
			보	3,000,000			
			상				
			금				
			배	10,000,000			
			상				
			금				
			자	8,525,000			
			산				
			취				
			득				
			비				
			문	451,013,000			
			화				
			공				
			보				
			수				
			용				
			비				
			및				
			수				
			료	333,433,000			

(단위: 원)

시·도·군·구·시·읍·면	예산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 - C)	불용액 (A - E)	예산잔액 (A - C)
	2,669,34,000	2,606,675,860	2,606,675,860		62,678,140	62,678,140
	2,132,679,000	1,964,196,970	1,984,196,970		148,482,030	148,482,030
	59,383,000	34,026,150	34,026,150		25,356,850	25,356,850
	823,456,000	801,253,300	801,253,300		22,202,700	22,202,700
	149,788,000	34,369,370	34,369,370		115,418,630	115,418,630
	22,250,000	20,807,380	20,807,380		1,442,620	1,442,620
	1,037,014,000	804,315,110	804,315,110		232,698,890	232,698,890
	210,965,000	172,688,940	172,688,940		38,276,060	38,276,060
	5,800,000	5,250,000	5,250,000		550,000	550,000
	6,000,000	4,230,000	4,230,000		1,770,000	1,770,000
	5,889,000	5,885,570	5,885,570		3,430	3,430
	102,711,000	88,709,130	88,709,130		14,001,870	14,001,870
	37,540,000	37,114,510	37,114,510		425,490	425,490
	26,500,000	26,470,730	26,470,730		29,270	29,270
	5,000,000	0	0		5,000,000	5,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0	0
	10,000,000	0	0		10,000,000	10,000,000
	8,525,000	2,029,000	2,029,000		6,496,000	6,496,000
8,000,000	459,013,000	387,163,010	387,163,010		71,849,990	71,849,990
8,000,000	341,433,000	330,569,350	330,569,350		10,863,650	10,863,65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상(△)감	
장	관	항	세항	목			신용	이용이채
				정보비	15,320,000			
				특별판공비	76,620,000			
				보상비	25,040,000			
				자산취득비	600,000			
				감사실운영	76,149,000			
				수당	7,200,000			
				상용피부비	197,000			
				급량비	10,560,000			
				국내여비	12,960,000			
				수용비및수수료	11,152,000			
				정보비	7,200,000			
				특별판공비	26,880,000			
				내무행정비	19,541,857,000	139,629,000		
				내무행정	7,518,650,000		△2,535,000	2,535,000
				사무관리	7,056,046,000		△2,535,000	2,535,000
				상용피부비	15,749,000			
				국내여비	13,000,000		△1,171,000	
				국외여비	24,640,000		1,171,000	
				수용비및수수료	98,840,000			
				정보비	216,600,000			

(단위: 원)

시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5,320,000	12,977,700	12,977,700		2,342,300	2,342,300
	76,620,000	26,519,720	26,519,720		50,100,280	50,100,280
	25,040,000	16,586,240	16,586,240		8,453,760	8,453,760
	600,000	510,000	510,000		90,000	90,000
	76,149,000	59,772,617	59,772,617		16,376,383	16,376,383
	7,200,000	1,770,000	1,770,000		5,430,000	5,430,000
	197,000	187,000	187,000		10,000	10,000
	10,560,000	9,690,560	9,690,560		869,440	869,440
	12,960,000	11,392,960	11,392,960		1,567,040	1,567,040
	11,152,000	7,130,437	7,130,437		4,021,563	4,021,563
	7,200,000	6,030,000	6,030,000		1,170,000	1,170,000
	26,880,000	23,571,660	23,571,660		3,308,340	3,308,340
2,615,508,000	22,357,004,000	19,883,873,920	19,813,612,920	70,261,000	2,473,130,080	2,473,130,080
1,714,478,000	9,233,128,000	8,842,502,510	8,842,502,510		390,625,490	390,625,490
1,711,478,000	8,770,524,000	8,398,888,600	8,398,888,600		370,635,400	370,635,400
	15,749,000	14,000,000	14,000,600		1,748,400	1,748,400
	11,829,000	7,395,530	7,395,530		4,433,470	4,433,470
	25,811,000	25,808,920	25,808,920		2,080	2,080
	98,840,000	90,638,810	90,638,810		8,201,190	8,201,190
	216,600,000	213,477,500	213,477,500		3,122,500	3,122,500

예산과목				예산액	액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기관운영공비	63,820,000			
			특별공비	280,981,000			
			공공요금	750,000			
			계세공과금	13,252,000			
			임차료	201,000,000			
			차량비	75,392,000			
			시설장비유자비	38,119,000			
			연료비	48,275,000			
			보상금	30,000,000			
			자산취득비	73,623,000			
			시설비	3,426,862,000			
			시설부대비	58,300,000		△1,364,000	
			대수선비	25,843,000			
			토지매입비	2,351,000,000		1,364,000	
			국민운농지원	371,233,000			
			수당	1,400,000			
			급량비	1,000,000			
			국내여비	1,560,000			
			수용비및수수료	25,218,000			
			정보비	44,940,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발용액 (A-B)	예산잔액 (A-C)
	63,820,000	63,030,000	63,030,000		790,000	790,000
	280,981,000	267,850,170	267,850,170		13,130,830	13,130,830
	750,000	687,810	687,310		62,190	62,190
	13,252,000	8,936,480	8,936,480		4,315,520	4,315,520
	201,000,000	200,000,000	200,000,000		1,000,000	1,000,000
	75,392,000	71,443,940	71,443,940		3,948,060	3,948,060
	38,119,000	36,137,020	36,137,020		1,981,980	1,981,980
	48,275,000	33,532,000	33,532,000		14,743,000	14,743,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0	0
	73,623,000	65,209,410	65,209,410		8,413,590	8,413,590
1,658,619,000	5,085,481,000	4,825,181,220	4,825,181,220		260,299,780	260,299,780
55,459,000	112,795,000	69,756,370	69,756,370		43,038,630	43,038,630
	25,843,000	24,439,070	24,439,070		1,403,930	1,403,930
	2,352,354,000	2,352,363,750	2,352,363,750		250	250
	371,233,000	358,022,090	358,022,090		13,210,910	13,210,910
	1,4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1,000,000	950,000	950,000		50,000	50,000
	1,560,000	1,482,000	1,482,000		78,000	78,000
	25,218,000	22,672,800	22,672,800		2,545,200	2,545,200
	44,940,000	42,505,000	42,505,000		2,435,000	2,435,00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특별판공비	14,950,000			
			임차료	400,000			
			보상금	234,273,000			
			민간에대한경상보조	47,492,000			
			민원실운영	91,371,000			
			수당	2,520,000			
			상용피복비	7,093,000			
			수용비및수료	30,693,000			
			재료비기타	26,085,000			
			특별판공비	5,980,000			
			시설장비유지비	1,350,000			
			보상금	9,576,000			
			자산취득비	8,974,000			
			동행정지도	12,023,217,000	199,629,000		
			동행정운영	12,023,217,000	199,629,000		
			급여	2,327,577,000			
			상여금	1,312,577,000			
			수당	1,118,882,000			
			징액수당	1,342,759,000			
			상용피복비	20,526,000			

사고이원액	예산원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원액 (B - C)	부용액 (A - B)	예산잔액 (A - C)
	14,950,000	13,733,770	13,733,770		1,216,230	1,216,230
	400,000	300,000	300,000		100,000	100,000
	234,273,000	230,639,980	230,639,980		3,633,020	3,633,020
	47,492,000	45,038,540	45,038,540		2,453,460	2,453,460
	91,371,000	84,591,820	84,591,820		6,779,180	6,779,180
	2,520,000	1,800,000	1,800,000		720,000	720,000
	7,093,000	5,748,800	5,748,800		1,344,200	1,344,200
	30,693,000	27,090,520	27,090,520		3,602,480	3,602,480
	26,085,000	25,870,100	25,870,100		214,900	214,900
	5,980,000	5,010,000	5,010,000		70,000	70,000
	1,350,000	1,123,300	1,123,300		227,700	227,700
	9,576,000	9,432,000	9,432,000		144,000	144,000
	8,974,000	8,518,100	8,518,100		455,900	455,900
901,046,000	13,123,876,000	11,041,371,410	10,971,110,410	70,261,000	2,082,504,590	2,152,765,590
911,500,000	13,123,876,000	11,041,371,410	10,971,110,410	70,261,000	2,082,504,590	2,152,765,590
	2,327,577,000	2,049,802,700	2,049,802,700		277,774,240	277,774,240
	1,312,577,000	996,539,580	996,539,580		206,037,420	206,037,420
	1,118,882,000	1,099,896,150	1,099,896,150		19,045,850	19,045,850
	1,342,759,000	1,359,572,405	1,359,572,405		183,186,595	183,186,595
	20,526,000	19,219,600	19,219,600		1,306,400	1,306,40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이용이체
				금량비	50,105,000	106,175,000		
				일용잡금	45,024,000			
				국내여비	0	20,457,000		
				수용비및수수료	294,394,000	46,659,000		
				복리후생비	1,185,604,000			
				재료비기타	0	15,775,000		
				정보비	74,400,000			
				기타운영판공비	36,960,000			
				특별판공비	126,807,000			
				공공요금	42,883,000	455,000		
				제세공과금	5,522,000			
				임차료	0	2,250,000		
				차량비	27,800,000	2,982,000		
				시설장비유지비	32,193,000			
				연료비	29,892,000	4,836,000		
				보상금	815,302,000			
				연금지급금	73,616,000			
				자산취득비	25,444,000			
				시설비	1,780,452,000			
				시설부대비	16,800,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56,280,000	151,987,450	151,987,450		4,292,550	4,292,550
	45,024,000	36,929,320	36,929,320		8,094,680	8,094,680
	20,457,000	18,332,700	18,332,700		2,124,300	2,124,300
	341,053,000	311,936,890	311,936,890		29,116,110	29,116,110
	1,185,604,000	1,039,939,760	1,039,939,760		145,664,240	145,664,240
	15,775,000	15,774,600	15,774,600		400	400
	74,400,000	71,336,810	71,336,810		3,063,190	3,063,190
	36,960,000	36,890,000	36,890,000		70,000	70,000
	126,807,000	119,283,700	119,283,700		7,523,300	7,523,300
	43,378,000	43,081,200	43,081,200		296,800	296,800
	5,522,000	4,934,820	4,934,820		587,180	587,180
	2,250,000	2,138,000	2,138,000		112,000	112,000
	30,782,000	23,271,350	23,271,350		7,510,650	7,510,650
	32,193,000	31,607,460	31,607,460		585,540	585,540
	34,728,000	34,726,200	34,726,200		1,800	1,800
	815,302,000	781,384,262	781,384,262		33,917,738	33,917,738
	73,616,000	0	0		73,616,000	73,616,000
	25,444,000	8,667,930	8,667,930		16,776,070	16,776,070
264,961,000	2,045,413,000	1,490,490,330	1,420,229,330	70,261,000	554,922,670	554,922,670
888,000	17,688,000	881,500	881,500		16,806,500	16,806,50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토지매입비	0			
			관서당경비	1,147,708,000			
			재무행정비	882,443,000			
			지방수입관리	882,443,000			
			재산관리	28,287,000			
			수용비및수수료	14,287,000			
			정보비	1,800,000			
			특별관공비	2,400,000			
			제세공과금	9,800,000			
			회계관리	530,837,000			
			수당	380,000			
			급량비	900,000			
			수용비및수수료	54,215,000			
			재료비기타	1,890,000			
			정보비	3,240,000			
			보험금	322,000			
			지산취득비	14,000,000			
			정수용품구매비	456,910,000			
			세무지도	301,961,000			
			수당	23,708,00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비용액 (A-B)	예산잔액 (A-C)
635,181,000	635,181,000	201,611,920	201,611,920		433,569,080	433,569,080
	1,147,708,000	1,091,194,713	1,091,194,713		56,513,287	56,513,287
	882,443,000	744,747,770	744,387,770	360,000	137,695,230	138,055,230
	882,443,000	744,747,770	744,387,770	360,000	137,695,230	138,055,230
	28,287,000	21,766,330	21,766,330		6,520,670	6,520,670
	14,287,000	11,680,120	11,680,120		2,606,880	2,606,880
	1,800,000	1,770,000	1,770,000		30,000	30,000
	2,400,000	2,200,000	2,200,000		200,000	200,000
	9,800,000	6,116,210	6,116,210		3,683,790	3,683,790
	530,837,000	444,982,510	444,622,510	360,000	85,854,490	86,214,490
	380,000	0	0		380,000	380,000
	900,000	900,000	900,000		0	0
	54,215,000	48,544,590	48,544,590		5,670,410	5,670,410
	1,890,000	1,890,000	1,890,000		0	0
	3,240,000	3,240,000	3,240,000		0	0
	322,000	322,000	322,000		0	0
	14,000,000	12,790,200	12,790,200		209,800	209,800
	456,910,000	377,295,720	376,935,720	360,000	79,614,280	79,974,280
	301,961,000	264,916,600	264,916,600		37,044,400	37,044,400
	23,708,000	19,206,720	19,206,720		4,501,280	4,501,280

예산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급량비	18,961,000			
			국내역비	22,995,000			
			수용비및수수료	72,981,000			
			재료비기타	22,680,000			
			정보비	102,264,000			
			특별관공비	1,800,000			
			공공요금	36,572,000			
			토지관리	21,358,000			
			수당	5,040,000			
			수용비및수수료	8,283,000			
			재료비기타	1,890,000			
			정보비	4,320,000			
			특별관공비	600,000			
			공공요금	1,225,000			
			사회복지비	17,563,912,000	170,000,000	△5,000,000	5,000,000
			복지사업비	5,100,292,000	170,000,000		
			일반사회복지	3,233,987,000			
			사회복지행정	144,941,000			
			급량비	600,000			
			국내역비	1,286,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8,961,000	17,257,500	17,257,500		1,703,500	1,703,500
	22,995,000	21,414,900	21,414,900		1,580,100	1,580,100
	72,981,000	48,805,020	48,805,020		24,175,980	24,175,980
	22,680,000	22,134,000	22,134,000		546,000	546,000
	102,264,000	98,938,610	98,938,610		3,325,390	3,325,390
	1,800,000	1,800,000	1,800,000		0	0
	36,572,000	35,360,850	35,360,850		1,211,150	1,211,150
	21,358,000	13,082,330	13,082,330		8,275,670	8,275,670
	5,040,000	1,050,000	1,050,000		3,990,000	3,990,000
	8,283,000	5,377,530	5,377,530		2,905,470	2,905,470
	1,890,000	1,890,000	1,890,000		0	0
	4,320,000	3,810,000	3,810,000		510,000	510,000
	600,000	500,000	500,000		100,000	100,000
	1,225,000	454,800	454,800		770,200	770,200
882,557,000	8,706,469,000	15,725,195,837	15,170,159,357	555,042,480	2,981,273,163	3,536,315,643
202,013,000	5,472,305,000	4,001,885,585	3,990,031,585	11,854,000	1,470,419,415	1,482,273,415
202,013,000	3,436,000,000	2,215,783,409	2,203,929,409	11,854,000	1,220,216,591	1,232,070,591
	144,941,000	74,336,280	74,336,280		70,604,720	70,604,720
	600,000	600,000	600,000		0	0
	1,286,000	1,201,500	1,201,500		94,500	94,50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번	항	세항			목	신	용
				수용비및수수료	23,590,000			
				재료비기타	5,195,000			
				정보비	2,160,000			
				특별관공비	22,600,000			
				보상금	55,600,000			
				민간에대한경상보조	14,400,000			
				이자보전금	19,500,000			
				가중복지행정	2,042,576,000			
				수상	10,680,000			
				수용비및수수료	15,192,000			
				재료비기타	1,890,000			
				특별관공비	31,484,000			
				공공요금	2,639,000			
				담사료	1,831,000			
				시설장비용비	18,350,000			
				연료비	2,581,900			
				보상금	732,317,000			
				민간에대한경상보조	131,110,000			
				민간에대한환	93,112,000			
				자산취득비	12,161,000			

사교이월액	예산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 - C}	잔용액 {A - B}	예산잔액 {A - C}
	23,590,000	20,965,010	20,965,010		2,624,990	2,624,990
	5,195,000	5,142,800	5,142,800		52,200	52,200
	2,160,000	2,100,000	2,100,000		60,000	60,000
	22,600,000	13,882,300	13,882,300		8,717,700	8,717,700
	55,600,000	10,913,310	10,913,310		44,686,690	44,686,690
	14,400,000	14,400,000	14,400,000		0	0
	19,500,000	5,131,360	5,131,360		14,368,640	14,368,640
302,013,000	3,241,589,000	1,628,993,809	1,617,069,809	11,854,000	615,665,131	627,519,131
	10,680,000	7,380,000	7,380,000		3,300,000	3,300,000
	15,192,000	6,835,960	6,835,960		8,656,020	8,656,020
	1,890,000	0	0		1,890,000	1,890,000
	31,484,000	30,957,610	30,957,610		526,390	526,390
	2,639,000	1,907,839	1,907,839		791,161	791,161
	1,831,000	652,300	652,300		1,178,700	1,178,700
	18,350,000	4,516,970	4,516,970		13,733,030	13,733,030
	2,581,900	2,361,220	2,361,220		222,780	222,780
	732,317,000	261,195,560	261,195,560		471,121,440	471,121,440
	131,110,000	115,752,400	115,752,400		15,387,600	15,387,600
	93,112,000	81,167,820	81,167,820		11,934,180	11,934,180
	12,161,000	7,352,310	7,352,310		4,808,740	4,808,740

예 신 과 목					예 산 액	예 비 비	증 (△) 감	
장	관	항	세 항	목			전	용
				시 설 비	897,350,000			
				시 설 부 대 비	35,780,000			
				민 간 예 대 한 자 본 적 보 조	11,500,000			
				반 환 금	44,316,000			
			유	아 교 육	1,046,470,000			
				수 용 비 및 수 수 료	762,000			
				보 상 금	268,560,000			
				민 간 예 대 한 경 상 보 조	720,872,000			
				사 처 단 제 예 대 한 위 탁 금	12,276,000			
				민 간 예 대 한 자 본 적 보 조	4,000,000			
			생	활 보 호	1,712,540,000	170,000,000		
				저 소 득 총 보 호	1,712,540,000	170,000,000		
				수 용 비 및 수 수 료	4,165,000			
				보 상 금	637,375,000			
				시 설 비	1,061,000,700	170,000,000		
				시 설 부 대 비	10,000,000			
			생	활 체 육	153,765,000			
				생 활 체 육 지 원	153,765,000			
				금 량 비	4,200,000			
				국 내 여 비	3,276,000			

(단위: 원)

시 고 이 월 액	예 산 현 액 (A)	지 출 원 인 위 액 (B)	지 출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 (B - C)	불 용 액 (A - B)	예 산 잔 액 (A - C)
202,013,000	1,099,363,000	1,040,682,830	1,040,682,830		58,680,170	58,680,170
	35,780,000	12,345,580	491,580	11,854,000	23,434,420	35,288,420
	11,500,000	11,500,000	11,500,000		0	0
	44,316,000	44,315,500	44,315,500		500	500
	1,046,470,000	512,523,260	512,523,260		533,946,740	533,946,740
	762,000	201,960	201,960		560,040	560,040
	268,560,000	39,905,000	39,905,000		228,655,000	228,655,000
	720,872,000	418,233,490	418,233,490		302,638,510	302,638,510
	12,276,000	12,276,000	12,276,000		0	0
	44,000,000	41,906,810	41,906,810		2,093,190	2,093,190
	1,882,540,000	1,668,059,886	1,668,059,886		214,480,114	214,480,114
	1,882,540,000	1,668,039,886	1,668,039,886		214,480,114	214,480,114
	4,165,000	589,600	589,600		3,575,400	3,575,400
	637,375,000	529,746,386	529,746,386		107,628,614	107,628,614
	1,231,000,000	1,133,132,000	1,133,132,000		97,868,000	97,868,000
	10,000,000	4,591,900	4,591,900		5,408,100	5,408,100
	153,765,000	118,042,240	118,042,240		35,722,710	35,722,710
	153,765,000	118,042,240	118,042,240		35,722,710	35,722,710
	4,200,000	3,872,500	3,872,500		327,500	327,500
	3,276,000	3,100,500	3,100,500		175,500	175,50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전	용
				수용비및수수료	9,197,000			
				재료비기타	1,890,000			
				특별판공비	73,740,000			
				공공요금	224,000			
				임차료	4,300,000			
				보상금	39,460,000			
				시설비	7,478,000			
				시설부대비	10,000,000			
				보건위생비	1,798,304,000		△3,000,000	3,000,000
				보건관리	1,688,780,000		△5,000,000	5,000,000
				보건행정	1,493,373,000		△2,000,000	2,000,000
				급여	378,163,000			
				상표료	196,385,000			
				기타보수	139,689,000			
				수당	37,787,000			
				경액수당	290,673,000		5,000,000	
				상용과목비	8,138,000			
				급료비	2,350,000			
				수용비및수수료	6,281,000			
				복리후생비	181,917,00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행 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복용액 (A-B)	예산잔액 (A-C)
	9,197,000	6,307,330	6,307,330		2,889,670	2,889,670
	1,890,000	1,890,000	01,890,000		0	0
	73,740,000	70,379,000	70,379,000		3,361,000	3,361,000
	224,000	0	0		224,000	224,000
	4,300,000	1,455,000	1,455,000		2,845,000	2,845,000
	39,460,000	28,712,560	28,712,560		10,747,440	10,747,440
	7,478,000	2,325,400	2,325,400		5,152,600	5,152,600
	10,000,000	0	0		10,000,000	10,000,000
	1,798,304,000	1,665,785,560	1,665,785,560		132,518,440	132,518,440
	1,688,780,000	1,575,531,560	1,575,531,560		113,248,440	113,248,440
	1,493,373,000	1,408,724,020	1,408,724,020		84,648,980	84,648,980
	378,163,000	370,522,270	370,522,270		7,640,730	7,640,730
	196,385,000	184,097,840	184,097,840		11,287,160	11,287,160
	139,689,000	129,214,620	129,214,620		10,474,380	10,474,380
	37,787,000	34,661,810	34,661,810		3,125,190	3,125,190
	290,673,000	264,906,550	264,906,550		25,766,450	25,766,450
	8,138,000	6,207,000	6,207,000		1,931,000	1,931,000
	2,350,000	1,102,500	1,102,500		1,247,500	1,247,500
	6,281,000	4,622,530	4,622,530		1,658,470	1,658,470
	181,917,000	163,287,040	163,287,040		18,629,960	18,629,96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진	용
				재료비기타	40,630,000			
				정보비	9,000,000			
				기관운영관공비	6,600,000			
				특별판공비	2,400,000			
				공공요금	60,000			
				제세공과금	3,851,000			
				차량비	14,663,000			
				시설장비유지비	1,894,000			
				연료비	907,000			
				보상금	69,790,000			
				연료지급금	12,940,000		△5,000,000	
				자산취득비	65,780,000			
				관서당경비	54,475,000			
				보건지도	85,883,000			
				국내여비	2,996,000			
				수용비및수수료	4,278,000			
				재료비기타	6,648,000			
				공공요금	551,000			
				연료비	210,000			
				의료비	68,768,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40,630,000	40,128,000	40,128,000		502,000	502,000
	9,000,000	8,700,000	8,700,000		300,000	300,000
	6,600,000	6,600,000	6,600,000		0	0
	2,400,000	2,400,000	2,400,000		0	0
	60,000	0	0		60,000	60,000
	3,851,000	1,739,150	1,739,150		2,111,850	2,111,850
	14,663,000	8,198,280	8,198,280		6,464,720	6,464,720
	1,894,000	1,421,800	1,421,800		472,200	472,200
	907,000	869,000	869,000		38,000	38,000
	69,790,000	65,825,000	65,825,000		3,965,000	3,965,000
	12,940,000	0	0		7,940,000	7,940,000
	65,780,000	64,309,810	64,309,810		1,470,190	1,470,190
	54,475,000	49,910,820	49,910,820		4,564,180	4,564,180
	85,883,000	61,811,750	61,811,750		24,071,250	24,071,250
	2,996,000	2,160,600	2,160,600		835,400	835,400
	4,278,000	4,026,500	4,026,500		251,500	251,500
	6,648,000	6,648,000	6,648,000		0	0
	551,000	180,000	180,000		371,000	371,000
	210,000	204,450	204,450		5,550	5,550
	68,768,000	47,647,000	47,647,000		21,121,000	21,121,00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권	항	세항			목	신	용이
				보상금	662,000			
				배상금	500,000			
				민간에대한경상보조	980,000			
				반환금	290,000			
				의약관리	109,524,000			
				재료비기타	15,243,000			
				시설장비유지비	700,000			
				의료비	92,581,000			
				위생관리	109,524,000			
				급량비	8,316,000			
				국내여비	13,608,000			
				수용비및수수료	4,200,000			
				정보비	50,400,000			
				특별관공비	30,000,000			
				보상금	1,800,000			
				배상금	1,200,000			
				환경녹지비	16,755,316,000			
				환경위생	8,199,959,000			
				쓰레기처리	7,787,393,000			
				상용피복비	64,658,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의 예 정 액 {B - C}	분 용 액 {A - B}	예산잔액 {A - C}
	662,000	656,000	656,000		6,000	6,000
	500,000	0	0		500,000	500,000
	980,000	0	0		980,000	980,000
	290,000	289,200	289,200		800	800
	109,524,000	104,995,790	104,995,790		4,528,210	4,528,210
	15,243,000	12,832,410	12,832,410		2,410,590	2,410,590
	700,000	0	0		700,000	700,000
	92,581,000	92,163,380	92,163,380		1,417,620	1,417,620
	109,524,000	90,254,000	90,254,000		19,270,000	19,270,000
	8,316,000	8,280,000	8,280,000		36,000	36,000
	13,608,000	13,608,000	13,608,000		0	0
	4,200,000	3,721,000	3,721,000		479,000	479,000
	50,400,000	49,500,000	49,500,000		9,900,000	9,900,000
	30,000,000	22,945,000	22,945,000		7,055,000	7,055,000
	1,800,000	0	0		1,800,000	1,8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0	0
	680,544,000	1,435,860,000	10,057,524,692	9,514,336,212	543,188,480	1,378,335,308
	338,200,000	8,508,159,000	7,354,530,082	7,267,189,632	87,340,450	1,153,628,918
	368,200,000	8,096,498,000	6,964,817,802	6,877,477,352	87,340,450	1,130,675,198
	64,658,000	57,986,650	57,986,650		6,671,350	6,671,35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급량비	7,138,000			
			일용잡금	4,566,618,000			
			수용비및수수료	49,591,000			
			특별판공비	38,292,000			
			공공요금	86,755,000			
			제세공과금	23,764,000			
			임차료	11,000,000			
			차량비	244,244,000			
			연료비	2,721,000			
			보상금	564,355,000			
			연금지급금	263,675,000			
			출연금	37,610,000			
			자치단체에 대한위탁금	172,500,000			
			자산취득비	69,860,000			
			시설비	340,000,000			
			시설부대비	10,000,000			
			정수용품구매비	876,000,000			
			민간에대한 대행사업비	358,512,000			
			분노처리	381,228,000			
			상용피복비	3,292,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7,138,000	6,387,500	6,387,500		750,500	750,500
	4,566,618,000	4,359,630,090	4,359,630,090		206,987,910	206,987,910
	49,591,000	46,925,080	46,925,080		2,665,920	2,665,920
	38,292,000	34,608,550	34,608,550		3,683,450	3,683,450
	86,755,000	9,357,890	9,357,890		77,397,110	77,397,110
	23,764,000	23,762,950	23,762,950		1,050	1,050
	11,000,000	0	0		11,000,000	11,000,000
	244,244,000	226,405,670	226,405,670		17,838,330	17,838,330
	2,721,000	1,262,820	1,262,820		1,458,180	1,458,180
	564,355,000	558,109,540	558,109,540		6,245,460	6,245,460
	263,675,000	68,220,042	68,220,042		195,454,958	195,454,958
	37,610,000	37,610,000	37,610,000		0	0
	172,500,000	172,500,000	172,500,000		0	0
240,100,000	309,960,000	298,300,830	298,300,830		11,659,170	11,659,170
68,100,000	408,190,000	151,855,220	64,514,770	87,340,450	255,244,780	343,585,230
	10,000,000	9,320,000	9,320,000		680,000	680,000
	876,000,000	782,846,530	782,846,530		93,153,470	93,153,470
	358,512,000	119,728,440	119,728,440		238,783,560	238,783,560
	381,228,000	359,104,910	359,104,910		22,123,090	22,123,090
	3,292,000	2,434,710	2,434,710		857,290	857,29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간	용
				일용잡급	305,768,000			
				수용비및수수료	37,758,000			
				공공요금	19,004,000			
				면료비	6,606,000			
				시설비	8,800,000			
				환경관리	31,438,000			
				수당	3,600,000			
				상용피복비	504,000			
				남량비	1,250,000			
				수용비및수수료	5,764,000			
				정보비	18,000,000			
				특별관공비	2,200,000			
				보상금	130,000			
				공원녹지	2,555,357,000			
				공원관리	1,547,772,000			
				상용피복비	36,000			
				일용잡급	74,536,000			
				수용비및수수료	6,810,000			
				재료비기타	26,533,000			
				공공요금	15,638,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년 이월액 (B-C)	보편 이월액 (A-B)	예산잔액 (A-C)
	305,768,000	294,464,850	294,464,850		11,303,150	11,303,150
	37,758,000	36,535,380	36,535,380		1,222,620	1,222,620
	19,004,000	15,045,630	15,045,630		3,958,370	3,958,370
	6,606,000	5,004,340	5,004,340		1,601,660	1,601,660
	8,800,000	5,620,000	5,620,000		3,180,000	3,180,000
	31,438,000	30,607,370	30,607,370		830,630	830,630
	3,600,000	3,600,000	3,600,000		0	0
	504,000	460,900	460,900		43,100	43,100
	1,250,000	1,025,000	1,025,000		225,000	225,000
	5,764,000	5,201,470	5,201,470		562,530	562,530
	18,000,000	18,000,000	18,000,000		0	0
	2,200,000	2,200,000	2,200,000		0	0
	120,000	120,000	120,000		0	0
372,344,000	2,927,701,000	2,702,994,610	2,247,146,580	455,848,130	224,706,340	680,554,520
372,344,000	1,900,116,000	1,820,958,140	1,376,576,140	444,382,000	99,157,860	543,539,860
	36,000	0	0		36,000	36,000
	74,536,000	68,639,930	68,639,930		5,896,070	5,896,070
	6,810,000	2,410,400	2,410,400		4,399,600	4,399,600
	26,533,000	18,456,460	18,456,460		8,076,540	8,076,540
	15,638,000	15,216,710	15,216,710		471,290	471,29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전	용
				시설장비유지비	17,988,000			
				연료비	2,430,000			
				보상금	5,451,000			
				자산취득비	820,000			
				시설비	1,392,000,000			
				시설부대비	5,460,000			
				복지관리	1,007,585,000			
				상용피복비	531,000			
				일용잡금	232,902,000			
				수용비및수수료	4,402,000			
				재료비기타	78,881,000			
				공공요금	74,274,000			
				임차료	6,750,000			
				시설장비유지비	17,877,000			
				연료비	145,000			
				보상금	17,185,000			
				자산취득비	350,000			
				시설비	570,933,000			
				시설부대비	3,355,000			

(단위: 원)

사고이원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7,988,000	14,106,400	14,106,400		3,881,600	3,881,600
	2,430,000	2,367,200	2,367,200		62,800	62,800
	5,451,000	1,423,800	1,423,800		4,027,200	4,027,200
	820,000	0	0		820,000	820,000
334,594,000	1,726,594,000	1,656,080,780	1,211,648,780	444,382,000	70,513,220	514,895,220
37,750,000	43,210,000	42,256,460	42,256,460		953,540	953,540
	1,007,585,000	882,036,470	870,570,440	11,466,030	125,548,530	137,014,560
	531,000	420,000	420,000		111,000	110,000
	232,902,000	214,867,600	214,867,600		18,034,400	18,034,400
	4,402,000	2,197,500	2,197,500		2,204,500	2,204,500
	78,881,000	62,317,740	62,317,740		16,563,260	16,563,260
	74,274,000	58,592,100	58,592,100		15,681,900	15,681,900
	6,750,000	6,602,500	6,602,500		147,500	147,500
	17,877,000	15,594,040	15,594,040		2,282,960	2,282,960
	145,000	144,160	144,160		840	840
	17,185,000	5,031,170	5,031,170		12,153,830	12,153,830
	350,000	0	0		350,000	350,000
	570,933,000	513,403,710	501,937,680	11,466,030	57,529,290	68,995,320
	3,355,000	2,865,950	2,865,950		489,050	489,05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소)감	
장	관	항	세항			신	용
산업경제비				47,656,000			
산업경제비				47,656,000			
산업경제				47,656,000			
산업관리				47,656,000			
수당				840,000			
수용비및수수료				20,585,000			
재료비기타				4,703,000			
보상금				12,214,000			
배상금				3,914,000			
일반용자금				5,300,000			
지역개발비				19,356,411,000	16,181,000	2,281,000	3,175,000
건설사업비				18,238,060,000	15,181,000	2,281,000	2,705,100
건설관리				17,113,596,000	16,181,000		
도로관리				1,125,134,000	16,181,000		
수방				5,600,000			
상용과복비				618,000			
급량비				11,400,000			
일용급급				13,998,000			
수용비및수수료				3,938,000			
재료비기타				286,719,000			

사고이월액	예산잔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 - C)	결정액 (A - B)	예산잔액 (A - C)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0,950,900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0,950,900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0,950,900
	47,656,000	26,705,100	26,705,100		20,950,900	20,950,900
	840,000	840,000	840,000		0	0
	20,585,000	8,737,800	8,737,800		11,847,200	11,847,200
	4,703,000	125,000	125,000		4,578,000	4,578,000
	12,214,000	11,700,000	11,700,000		514,000	514,000
	3,914,000	1,602,500	1,602,500		2,311,500	2,311,500
	5,300,000	3,700,000	3,700,000		1,600,000	1,600,000
2,570,407,000	21,951,959,900	19,320,218,150	19,241,152,309	3,079,125,950	2,631,680,801	5,710,806,791
2,045,631,000	20,328,117,000	17,989,900,339	14,910,820,369	3,079,125,950	2,330,176,641	5,409,296,631
1,309,201,000	19,628,905,000	16,941,344,528	13,843,315,408	3,078,029,120	2,121,630,472	5,189,659,582
	1,112,330,000	1,600,450,320	1,979,450,320		122,829,680	122,829,680
	3,200,000	0	0		3,200,000	3,200,000
	648,000	569,000	569,000		95,900	95,800
	11,400,000	9,140,000	9,140,000		2,260,000	2,260,000
	13,998,000	12,060,000	12,060,000		1,937,900	1,937,900
	3,938,000	3,634,700	3,634,700		303,300	303,300
	286,719,000	188,966,800	188,966,800		97,752,200	97,752,20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용	이용이체
			공공요금	461,368,000			
			시설장비유지비	74,276,000			
			연료비	804,000			
			보상금	11,094,000			
			자산취득비	0	16,181,000		
			시설비	245,294,000			
			건설관리	520,553,000			
			수당	2,335,000			
			상용피복비	236,000			
			급량비	7,500,000			
			일용잡급	11,597,000			
			국내역비	5,070,000			
			수용비및수수료	10,810,000			
			정보비	23,000,000			
			특별관공비	26,840,000			
			임차료	10,280,000			
			보상금	422,885,000			
			지역개발	15,416,901,000			
			시설비	15,285,879,000			
			시설부대비	131,022,000			

(단위: 원)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461,368,000	451,267,550	451,267,550		10,100,450	10,100,450
	74,276,000	52,019,220	52,019,220		22,256,780	22,256,780
	804,000	800,930	800,930		3,070	3,070
	11,094,000	9,010,400	9,010,400		2,083,600	2,083,600
	16,181,000	16,181,000	16,181,000		0	0
	245,294,000	214,967,460	214,967,460		30,326,540	30,326,540
	520,553,000	360,145,530	360,145,530		160,407,470	160,407,470
	2,335,000	1,230,620	1,230,620		1,104,380	1,104,380
	236,000	0	0		236,000	236,000
	7,500,000	5,152,500	5,152,500		2,347,500	2,347,500
	11,597,000	11,596,090	11,596,090		910	910
	5,070,000	4,582,500	4,582,500		487,500	487,500
	10,810,000	7,703,010	7,703,010		3,106,990	3,106,990
	23,000,000	22,130,000	22,130,000		870,000	870,000
	26,840,000	25,904,500	25,904,500		935,500	935,500
	10,280,000	8,731,800	8,731,800		1,548,200	1,548,200
	422,885,000	273,114,510	273,114,510		149,770,490	149,770,490
1,909,201,000	17,326,102,000	15,487,708,678	12,415,679,538	3,072,029,120	1,838,393,322	4,910,422,442
1,909,201,000	17,195,060,000	15,336,440,568	12,326,411,448	3,072,029,120	1,796,639,432	4,868,668,552
	131,022,000	89,268,110	89,268,110		41,753,890	41,753,890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진
				주 택 사 업	505,582,000		△2,913,000
				주 택 사 업	447,242,000		△2,913,000
				상 용 피 복 비	212,000		
				급 량 비	2,500,000		
				일 용 잡 급	7,279,000		△2,913,000
				국 내 여 비	3,900,000		
				수용비및수수료	5,855,000		
				정 보 비	35,136,000		
				특 별 관 공 비	9,600,000		
				보 상 급	939,000		2,913,000
				배 상 급	318,822,000		
				이 차 보 전 급	63,000,000		
				건 축 지 도	58,340,000		
				수 당	9,120,000		
				급 량 비	8,316,000		
				국 내 여 비	13,008,000		
				수용비및수수료	2,096,000		
				정 보 비	7,200,000		
				특 별 관 공 비	18,000,000		

(단위: 원)

사 고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505,582,000	455,699,651	448,602,781	7,096,870	49,882,349	56,979,219
	447,242,000	406,125,491	399,028,621	7,096,870	41,116,509	48,213,379
	212,000	175,000	175,000		37,000	37,000
	2,500,000	2,477,500	2,477,500		22,500	22,500
	4,366,000	734,540	734,540		3,631,460	3,631,460
	3,900,000	3,147,300	3,147,300		752,700	752,700
	5,855,000	3,923,180	3,923,180		1,931,820	1,931,820
	35,136,000	34,752,000	34,752,000		384,000	384,000
	9,600,000	9,307,000	9,307,000		293,000	293,000
	939,000	3,449,240	3,449,240		401,760	401,760
	318,822,000	312,577,990	305,481,120	7,096,870	6,244,010	13,340,880
	63,000,000	35,581,741	35,581,741		27,418,259	27,418,259
	58,340,000	49,574,160	49,574,160		8,765,840	8,765,840
	9,120,000	3,060,000	3,060,000		6,060,000	6,060,000
	8,316,000	7,722,000	7,722,000		594,000	594,000
	13,008,000	12,636,000	12,636,000		372,000	372,000
	2,096,000	1,803,900	1,803,900		292,100	292,100
	7,200,000	7,007,420	7,007,420		192,580	192,580
	18,000,000	17,344,840	17,344,840		655,160	655,160

예산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전	용
				도 시 계 획	639,130,000			
				도 시 정 비	37,193,000			
				수 당	2,160,000			
				상 용 피 복 비	37,000			
				수 용 비 및 수 수 료	21,026,000			
				특 별 관 공 비	720,000			
				임 차 료	2,250,000			
				용 역 비	0			
				보 상 금	11,000,000			
				지 역 교 통	577,521,000			
				수 당	85,915,000			
				상 용 피 복 비	17,884,000			
				국 내 여 비	22,032,000			
				수 용 비 및 수 수 료	95,346,000			
				재 료 비 기 타	18,900,000			
				정 보 비	48,000,000			
				특 별 관 공 비	11,720,000			
				공 공 요 금	90,680,000			
				시 설 장 비 유 지 비	186,799,000			
				연 료 비	245,000			

(단위: 원)

사 고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136,430,000	775,560,000	616,902,180	616,902,180		158,657,820	158,657,820
136,430,000	173,623,000	141,613,060	141,613,060		32,009,940	32,009,940
	2,160,000	1,230,000	1,230,000		930,000	930,000
	37,000	0	0		37,000	37,000
	21,026,000	9,204,860	9,204,860		11,821,140	11,821,140
	720,000	439,200	439,200		280,800	280,800
	2,250,000	609,000	609,000		1,641,000	1,641,000
136,430,000	136,430,000	130,130,000	130,130,000		6,300,000	6,300,000
	11,000,000	0	0		11,000,000	11,000,000
	577,521,000	454,796,520	454,796,520		122,724,480	122,724,480
	85,915,000	77,161,430	77,161,430		8,753,570	8,753,570
	17,884,000	12,152,520	12,152,520		5,731,480	5,731,480
	22,032,000	20,412,000	20,412,000		1,620,000	1,620,000
	95,346,000	73,368,970	73,368,970		21,977,030	21,977,030
	18,900,000	17,919,000	17,919,000		981,000	981,000
	48,000,000	16,370,000	16,370,000		31,630,000	31,630,000
	11,720,000	8,286,080	8,286,080		3,433,920	3,433,920
	90,680,000	64,955,080	64,955,080		25,724,920	25,724,920
	186,799,000	164,171,440	164,171,440		22,627,560	22,627,560
	245,000	0	0		245,000	245,00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목	건	용
				지 적 관 리	24,416,000			
				수 당	1,080,000			
				급 량 비	520,000			
				수용비및수수료	12,934,000			
				재료비기타	9,882,000			
				치 수 하 수 사 업 비	1,098,106,000			
				치 수 하 수 사 업	1,098,106,000			
				치 수 사 업	334,002,000			
				상 용 피 복 비	1,118,000			
				급 량 비	3,000,000			
				수용비및수수료	18,114,000			
				재 료 비 기 타	4,300,000			
				공 공 요 금	286,746,000			
				시 설 장 비 유 자 비	18,856,000			
				연 료 비	1,868,000			
				하 수 사 업	764,104,000			
				상 용 피 복 비	187,000			
				일 용 잡 급	167,442,000			
				수용비및수수료	1,198,000			
				재 료 비 기 타	34,000,00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행 취 액 (B)	지 출 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 - C)	불 용 액 (A - B)	예산잔액 (A - C)
	24,416,000	20,492,600	20,492,600		3,923,400	3,923,400
	1,080,000	1,080,000	1,080,000		0	0
	520,000	520,000	520,000		0	0
	12,934,000	9,505,600	9,505,600		3,428,400	3,428,400
	9,882,000	9,387,000	9,387,000		495,000	495,000
533,776,000	1,631,882,000	1,330,371,840	1,330,371,840		301,510,160	301,510,160
533,776,000	1,631,882,000	1,330,371,840	1,330,371,840		301,510,160	301,510,160
	334,002,000	170,622,130	170,622,130		163,379,870	163,379,870
	1,118,000	1,004,000	1,004,000		114,000	114,000
	3,000,000	502,500	502,500		2,497,500	2,497,500
	18,114,000	15,632,390	15,632,390		2,481,610	2,481,610
	4,300,000	720,000	720,000		3,580,000	3,580,000
	286,746,000	135,172,240	135,172,240		151,573,760	151,573,760
	18,856,000	15,730,000	15,730,000		3,126,000	3,126,000
	1,868,000	1,861,000	1,861,000		7,000	7,000
533,776,000	1,297,880,000	1,159,749,710	1,159,749,710		138,130,290	138,130,290
	187,000	176,000	176,000		11,000	11,000
	167,442,000	157,208,000	157,208,000		10,234,000	10,234,000
	1,198,000	533,280	533,280		664,720	664,720
	34,000,000	27,642,570	27,642,570		6,357,430	6,357,430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비비	증(△)감	
장	관	항	세항			전	용
			임차료	6,000,000			
			시설장비유지비	12,500,000			
			보상금	20,641,000			
			자산취득세	7,600,000			
			시설비	220,000,000			
			민간에대한사	294,536,000			
			민방위비	183,423,000		△1,587,000	1,587,000
			민방위비	183,423,000		△1,587,000	1,587,000
			민방위관리	185,423,000		△1,587,000	1,587,000
			민방위관리	98,273,000		△1,587,000	1,587,000
			급량비	750,000			
			국내여비	3,634,000			
			수용비및수수료	31,926,000		△1,587,000	
			특별관광비	1,180,000			
			공공요금	9,600,000			
			시설장비유지비	2,542,000			
			보상금	32,609,000		1,587,000	
			자산취득비	5,597,000			
			대수선비	9,700,000			
			반환금	735,00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액 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B-C)	불용액 (A-B)	예산잔액 (A-C)
	6,000,000	0	0		6,000,000	6,000,000
	12,500,000	8,172,920	8,172,920		4,327,080	4,327,080
	20,641,000	5,175,020	5,175,020		15,465,980	15,465,980
	7,600,000	1,271,160	1,271,160		6,328,840	6,328,840
533,776,000	753,776,000	681,570,760	681,570,760		72,205,240	72,205,240
	294,536,000	278,000,000	278,000,000		16,536,000	16,536,000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19,994,219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19,994,219
	183,423,000	163,428,781	163,428,781		19,994,219	19,994,219
	98,273,000	84,934,611	84,934,611		13,338,389	13,338,389
	750,000	750,000	750,000		0	0
	3,634,000	341,231	341,231		3,292,769	3,292,769
	30,339,000	25,142,150	25,142,150		5,196,850	5,196,850
	1,180,000	1,051,750	1,051,750		128,250	128,250
	9,600,000	9,443,450	9,443,450		156,550	156,550
	2,542,000	2,270,000	2,270,000		272,000	272,000
	34,196,000	33,574,730	33,574,730		621,270	621,270
	5,597,000	2,490,000	2,490,000		3,107,000	3,107,000
	9,700,000	9,136,300	9,136,300		563,700	563,700
	735,000	735,000	735,000		0	0

(전용)

예산과목					이전용 및
장	관	항	세항	목	증
의회비					5,694,000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의회운영	수용비및수수료	
			의정활동	국내여비	5,694,000
일반행정비					2,535,000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사무관리	국내여비	
				국외여비	1,171,000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1,364,000
사회복지비					5,000,000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보건행정	연금지불금	
				징액수당	5,000,000
지역개발비					2,913,000
	건설사업비	주택사업	주택사업	일용잡급	
				보상금	2,913,000
지역방위비					1,587,000
	민방위비	민방위	민방위관리	수용비및수수료	
				보상금	1,587,000
총계					17,729,000

(단위: 원)

이체금액	이전용 및 이체사유	승인일자
5,694,000	구의회의원 일비, 여비 조례개정으로 (세항) 의회운영 (목)수용비및수수료에서 (세항)의 정활동 (목)국내여비로 전용	'92. 12. 10
2,535,000	위생업소관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국내여비에서 전용	'92. 10. 10
1,171,000		
1,364,000	구민회관 부지매입비 이자부족	'92. 5. 28
5,000,000		
5,000,000	보건소직원 수당 인상부족분을 연금 지급금에서 전용	'92. 12. 10
2,913,000	일용잡급직 기능직전환에 따른 퇴직금부족분을	'92. 2. 27
2,913,000	일용잡급에서 전용	
1,587,000	하반기 민방위 교육강사료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용	'92. 9. 17
1,587,000		
17,729,000		

(단위 : 원)

예산과목					사업명
장	관	항	세항	목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시설비	문래1동사무소 증축공사
				"	신길7동 양평2동 직원식당증축공사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	회계관리	물품구매비	자동차용 소음측정기 구매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 사회복지	가정복지행	시설부대비	영등포1동 복지관및 신길2동노인정설계
	환경복지비				
		환경위생	쓰레기처리	시설비	쓰레기중간환송장 보장시설신축
		공원녹지			
			공원관리	시설비	신길 근린공원 조성
			녹지관리	"	철도연변시설녹지조성공사

예산액 (1)	지출원인 행위액 (2)	지출액 (3)	이월액			이월사유
			원인행위액 (4)=(2-3)	원인행위 미필분(5)	계 (4+5)	
95,014,000	73,751,000	3,130,000	70,621,000		70,621,000	
89,014,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89,014,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60,183,000	47,715,000	0	47,715,000		47,715,000	동철기공사 지연
28,831,000	22,546,000	0	22,546,000		22,546,000	"
5,000,000	3,490,000	3,130,000	360,000		360,000	조달수수료
1,114,000,000	824,220,420	269,177,940	555,042,480		555,042,480	
34,000,000	11,854,000	0	11,854,000		11,854,000	발주지연
1,080,000,000	812,336,420	269,177,940	543,188,480		543,188,480	
340,000,000	121,575,220	34,234,770	87,340,450		87,340,450	민원발생 공사지연
740,000,000	690,791,200	234,943,170	455,848,030		455,848,030	
500,000,000	450,791,200	6,409,200	444,382,000		444,382,000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보상지연
240,000,000	240,000,000	228,533,970	11,466,030		11,466,030	예산부족으로 보상지연

예산과목					사업명
장	관	항	세항	목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비		
				시설비	대신시장~신길 1212 간 도로개설공사
				"	대림동 988-942 간 도로개설 (보상.)
				"	영등포 7가 5-142 간 도로개설
				"	도림동 156-144 간 "
				"	신길동 268-272 간 "
				"	도림동 156 의 238-242 간 "
				"	신길 4 동사무소 - 209 간 "
				"	신길동 329-253 간 "
				"	" 3517-247 간 "
				"	" 2772-247 간 "

(단위: 원)

예산액 (1)	지출원인 행위액 (2)	지출액 (3)	이월액			이월사유
			원인행위액 (4)=(2-3)	원인행위 미필분 (5)	계 (4+5)	
8,783,927,000	8,579,483,290	5,500,357,300	3,079,125,990	48,434,390	3,127,560,380	
8,783,927,000	8,579,483,290	5,500,357,300	3,079,125,990	48,434,390	3,127,560,380	
8,471,349,000	8,266,905,290	5,194,876,170	3,072,029,120	48,434,390	3,120,463,510	
1,100,000,000	1,041,656,060	753,847,400	287,808,660	27,963,740	315,772,400	보상협의 기간부족
629,183,000	629,183,000	623,903,920	5,279,080		5,279,080	보상협의 지연
1,842,382,000	1,825,917,160	959,394,690	866,522,470	8,644,840	875,167,310	2차추경및 사업변경
500,000,000	500,000,000	467,568,220	32,041,780		32,041,780	보상협의 지연
500,000,000	500,000,000	449,433,740	50,566,260		50,566,260	"
500,000,000	500,000,000	280,974,070	219,025,930		219,025,930	"
500,000,000	500,000,000	394,853,500	105,146,500		105,146,500	"
300,000,000	300,000,000	296,927,500	4,072,500		4,072,500	"
300,000,000	300,000,000	267,309,000	32,691,000		32,691,000	"
960,000,000	960,000,000	42,172,000	917,828,000		917,828,000	"

목 산 과 목					사 업 명
장	관	항	세 항 목	목	
				시설비	대림동 759-886 간 도로개설
				"	신길동 190-220 간 "
				"	" 278-290 간 "
				"	영동포 1동 620 번지 도로개설
				"	문래 2가 13의 5-14의 5 개소 도로정비
				"	양평 2가 31 주변 하수도공사
				"	신길 2동 39 주변의 3 개소 하수도공사
				"	도림 2 동 239 주변의 4 개소 "
				"	도림천제방보강공사
		주택사업	주택사업	배 상 금	박사원사건 손해배상
합					계

(단위 : 원)

예산액 (1)	지출원인 행위액 (2)	지출액 (3)	이 율 액			이월사유
			원인행위액 (4)=(2-3)	원인행위 미필분 (5)	계 (4 + 5)	
330,784,000	330,784,000	318,016,500	12,767,500		12,767,500	보상협의 지
300,000,000	300,000,000	229,369,800	70,630,200		70,630,200	"
230,000,000	230,000,000	0	230,000,000		230,000,000	도시계획 시설변경
150,000,000	91,400,980	83,634,300	7,766,680	326,020	8,092,700	보상협의 지
80,000,000	68,343,630	14,503,290	53,840,340	192,270	54,032,610	동질기공사 중
35,000,000	20,096,130	0	20,096,130	1,301,870	21,398,000	"
34,000,000	26,444,980	2,422,240	21,022,700	3,531,020	27,553,720	"
50,000,000	38,978,660	4,874,720	34,103,940	1,108,340	35,212,280	"
130,000,000	104,100,690	6,281,240	97,819,450	5,366,290	103,185,740	"
312,578,000	312,578,000	305,481,130	7,096,870		7,096,870	소송지연
9,992,941,000	9,477,454,710	5,772,665,240	3,704,789,470	48,434,390	3,753,223,860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장	관			
의료시책사업비		1,332,518,000	1,281,457,777	1,189,714,901
	사업외수입	144,734,000	231,457,777	139,714,901
	보조금	1,207,784,000	1,050,000,000	1,050,000,000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증감		비고
		예산액대	정수결정액	
45,877,629	45,865,247	△ 182,803,099	△ 91,742,876	
45,877,629	45,865,247	△ 5,019,089	△ 91,742,876	
	-	△ 157,784,000	-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A)	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장	관	항	목			
의료혜사			사업외수입	144,734,000	231,457,777	139,714,901
			이월금	126,249,000	126,249,399	126,249,399
			순세계잉여금	126,249,000	126,249,399	126,249,399
			용자금수입	18,483,000	103,019,148	11,737,812
			용자금수입	18,483,000	103,019,148	11,737,812
			잡수입	2,000	2,189,230	1,727,690
			이자수입	1,000	0	0
			기타잡수입	1,000	2,189,230	1,727,690
			보조금	1,207,784,000	1,050,000,000	1,050,000,000
			보조금	1,207,784,000	1,050,000,000	1,050,000,000
			시비보조금	1,207,784,000	1,050,000,000	1,050,000,000
			합계	1,352,518,000	1,281,457,777	1,189,714,901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 감		사 (예산대비) 유 (중) 감
		예산액대 (C-A)	정수결정액대 (C-B)	
45,877,629	45,865,247	△ 5,019,099	△ 91,742,876	
		399		
		399		
45,877,629	45,403,707	△ 6,745,188	△ 91,281,336	
45,877,629	45,403,707	△ 6,745,188	△ 91,281,336	
	461,540	1,726,690	△ 461,540	
		△ 1,000		
	461,540	1,726,690	△ 461,540	
		△ 157,784,000		
		△ 157,784,000		
		△ 157,784,000		
45,877,629	45,865,247	△ 162,803,099	△ 91,742,876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장	관		예비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의료보호기금	1,352,518,000			
	의료시해사업비	1,348,678,000			
	기금운영비	3,840,000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352,518,000	937,455,980	937,455,980	-	415,062,020
1,348,678,000	933,886,980	933,886,980	-	414,792,000
3,840,000	3,570,000	3,570,000	-	270,000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장	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455,000,000	434,483,362	384,862,781
	사업외수입	455,000,000	434,483,362	384,862,78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비고
		예산액대	정수결정액대	
-	49,620,581	△70,137,219	△49,620,581	
-	49,620,581	△70,137,219	△49,620,581	

(단위: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장	관	항	목			
	사업외			455,000,000	434,483,362	384,862,781
	수입					
		이월금		122,462,000	109,627,900	109,627,900
			순세계잉여금	122,462,000	109,627,900	109,627,900
		용자금		178,510,000	162,117,781	112,497,200
		회수				
			용자금회수수입	178,510,000	162,117,781	112,497,200
		건입금		152,794,000	152,500,000	152,500,000
			구비보조건입금	152,794,000	152,500,000	152,500,000
		잡수익		1,231,000	10,237,681	10,237,681
			가 산 금	1,095,000	9,436,871	9,436,871
			의 과 수 입	136,000	890,810	890,810
			계	455,000,000	434,483,362	384,862,781

분납건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 감		사 총 (예산대비) 감
		예 산 액 대 (C-A)	징수결정액대 (C-B)	
	49,620,581	△ 70,137,219	△ 49,620,581	
		△ 12,834,100		
		△ 12,834,100		
	49,620,581	△ 66,012,800	△ 49,620,581	
	49,620,581	△ 66,012,800	△ 49,620,581	
		△ 294,000		
		△ 294,000		
		9,003,681		
		8,341,871		
		661,810		
	49,620,581	△ 70,137,219	△ 49,620,581	

예산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장	관		예비비	이전용및이체	사고이월액
	새마을사업비	455,000,000			
	새마을 소득사업	455,000,000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455,000,000	325,000,000	325,000,000	0	130,000,000
455,000,000	325,000,000	325,000,000	0	130,000,000

예비비결산조서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관	항	세항	목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구의회운영		14,434,000	10,260,680	10,260,180
			자산취득비	7,951,000	4,999,100	4,999,100
			시설비	5,604,000	5,261,580	5,261,580
			대수선비	879,000	0	0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비		119,100,000	29,821,860	29,821,860
			기타적보수	2,000,000	2,000,000	2,000,000
			정액수당	90,500,000	27,821,860	27,821,860
			복리후생비	26,600,000	0	0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199,629,000	160,703,040	160,703,040
			급량비	106,175,000	101,882,450	101,882,450
			국내여비	20,457,000	18,332,700	18,332,700
			수용비및수수	46,659,000	17,542,890	17,542,890

(단위: 원)

이월액	불용액	내용	승인일자
	4,173,320	상임위원실 집기, 비품 구입	92. 3.18
	2,951,900	"	
	342,420	"	
	879,000	"	
	89,278,140	기구신설 (환경, 주택, 지역교통, 건축과제 신설)로 직원 인건비적 경비부족	92.12.17
	0	"	
	62,678,140	"	
	26,600,000	"	
	38,925,960	14대 대통령선거및 14대 총선 법정사무소소요 경비 (국비부족분)	92. 3.18 (12.10)
	4,292,550	"	
	2,124,300	"	
	29,116,110	"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관	항	세 항	목			
			재료비기타	15,775,000	15,774,600	15,774,600
			공공요금	495,000	198,200	198,200
			임차료	2,250,000	2,138,000	2,138,000
			차량비	2,982,000	0	0
			연료비	4,836,000	4,834,200	4,834,200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층보호	시설비	170,000,000	72,132,000	72,132,000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자산취득비	16,181,000	16,181,000	16,181,000
총 계				519,344,000	289,098,580	289,098,500

이월액	불용액	내 용	승인일자
	400		
	296,800		
	112,000		
	2,982,000		
	1,800		
	97,868,000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92.6.8
	0	다목적제설차량구입 (환율인상추가분)	
	230,245,420		